

월간
재정포럼

2018. December_Vol.270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2

권두칼럼

디지털 전환과 '착한' 플랫폼 기업 | 전병유

현안분석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 최성은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학수

공공정책포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독일, 2018년 세법개정안 의회 통과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디지털 전환과 '착한' 플랫폼 기업 | 전병유 02

현안분석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 최성은 06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학수 30

공공정책포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 6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독일, 2018년 세법개정안 의회 통과 외 68

정책흐름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 주요 내용 114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122



디지털 전환과 '착한' 플랫폼 기업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한다. 개발연대의 역동성과 위기를 극복하는 탄력성(resilience)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현재 시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현대·기아차의 부진한 실적을 보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행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풀 허용과 관련한 택시 업계의 파업과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디지털 변환 기술과 플랫폼

한국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은 남북경제 협력이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전환 일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변환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과제도 던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편익에는 '사용'과 관련된 일차편익과 '개발-배포-관리'와 관련된 이차편익이 존재한다(Jorge Arbach, 2018). 일차편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고 공급망을 변화 시킴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편익이다. 그러나 일차편익은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채택함에 따라 비교우위의 경쟁력 편익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워진다. 디지털 기술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편익이 사라진다는 디지털 상품화

(digital commoditisation) 때문이다.

반면, 이차편익은 표준과 플랫폼을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편익이다. 무형자산이 더 중요해지고 재화에 서비스가 장착되며, 기술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술과 브랜딩 등에서의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효과와 결합된 승자 독식의 플랫폼 독점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 중국, 독일, 스웨덴 등의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이 심화하면서, 이차편익에서 디지털 기술 선발국과 후발국 사이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들 플랫폼 독점기업들은 기존 산업을 해체하고 전통적인 임금노동을 와해시킨다. 플랫폼 기업으로 포섭되는 이른바 깃노동(gig work)은 높은 유연성의 대가로 불안정성과 불평등이 심화되며, 기존 산업과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한국 경제는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 즉 데이터의 개발-배포-관리와 관련된 이차편익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와 사회 안전망의 무력화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 즉 데이터의 개발-배포-관리와 관련된 이차편익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와 사회 안전망의 무력화에 대응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의 필요성

최근 유통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모빌리티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GM,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자율주행차(EV-AV)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구글, 우버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그랩, 중국의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적 자동차산업과 운송서비스업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사업자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존의 법·제도과 충돌한다. 이는 최근 카풀 허용에 따른 택시 파업과 시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를 아직 명쾌하게 풀지 못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방안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이익과 피해-부담의
 사회적 교환, 그리고
 새로운 지배구조와
 기업 간 네트워크
 형태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착한’ 플랫폼
 기업 모델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과 사회적 합의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이득과 기존 사업체와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부담이 사회적으로 교환되는 ‘플러스 섬 혁신’과 공유-협력이라는 새로운 규칙과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경로 탈출형의 ‘착한’ 플랫폼기업 모델을 실험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네트워크-지적재산권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분을 가짐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공유하고 분배할 수 있는 국민배당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상상해볼 수 있다.

보다 보편적인 조세와 재분배, 사회적 보호 체계를 재설계하는 계기 마련

이러한 실험을 자동차-모빌리티 산업에서 먼저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물원 구조의 재벌체제’를 벗어나 완성차의 현대와 자율주행기술의 삼성, 전기차 배터리의 LG, 5G의 SK, 모빌리티의 카카오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플랫폼 기업 모델을 시험해보자는 제안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현재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국 경제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본다면 상상해볼 수 있는 제안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플랫폼 기업 모델이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 집중한다면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익과 피해-부담의 사회적 교환, 그리고 새로운 지배구조와 기업 간 네트워크 형태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착한’ 플랫폼 기업 모델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이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경제하에서의 소유권과 노동권을 새롭게 정의하고 더 보편적인 조세, 재분배, 그리고 사회적 보호 체계를 재설계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학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I. 서론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재원분담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한 가운데, 복지재정의 기능 및 재원분담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논의와 동시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의 재조정과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약 64%(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재조정 필요성이 재개되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규모가 큰 지출인 동시에 대부분이 법정지출이며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 복지 확대에 인한 중앙정부 지출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왔고,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이 복지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부담도 증가하여 왔다. 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광역시 자치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 보조율이나 국비 보조율 인상 등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중앙과 지방의 사무 기능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나 구조적 접근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더욱 재정분권 강화 측면에서 더 이상의 중앙정부 부담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국고보조사업 위주의 복지재원 분담구조와 복지사업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과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국가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 기능 및 재원분담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choi@kipf.re.kr)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정책 과제

2017년 기준 중앙정부 사회복지 지출은 129조 5천억원이며,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은 52조 6천억원으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 비율은 약 6: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급여 수급까지 많은 부분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약 27.2%(2017년 기준)는 복지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타 경제개발, 지역개발 부문의 지출에 비해 높은 규모이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의 약 88%(2017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보장급여, 의료급여,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높다.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6:4(중앙이 61%, 지방이 39%를 부담)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복지지출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5.4:4.5로 중앙정부 부담 비율이 지방비 부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전체 재정사용액 비율이 4:4.5:1.5이며 교육청을 합하고 중앙정부 지자체의 재정사용액 비율이 4:6인 것을 감안하면, 복지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사용액은 일반적인 지자체 세출 지방비 사용액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대부분이 법정지출이며 국고보조사업인 것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 10년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증가는 상당량의 복지지출 증가와 연관이 깊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에서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48%에서 2017년 약 64%로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주요 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앙정부 복지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의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중앙정부 사회복지 지출은 129조 5천억원이며,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은 52조 6천억원으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 비율은 약 6:4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에서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48%에서
2017년 약 64%로
증가하였다.

<표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예산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앙정부 사회보장 예산	67.6	74.6	81.2	86.4	92.6	97.4	106.4	115.7	123.4	129.5	
지방자치 사회 보장 예산	총계	23.6	26.1	28.8	30.5	33.0	37.3	42.5	46.8	49.5	52.6
	합 계	19.7	21.9	24.3	26.3	28.7	33.1	38.2	42.2	44.6	46.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 비	11.4	13.1	14.6	15.5	16.5	18.7	22.6	25.7	27.1	28.2
		(57.9)	(59.8)	(60.1)	(58.9)	(57.5)	(56.5)	(59.2)	(60.9)	(60.8)	(60.8)
		8.3	8.8	9.7	10.8	12.2	14.4	15.6	16.5	17.5	18.2
	지 방 비	(42.1)	(40.2)	(39.9)	(41.1)	(42.5)	(43.5)	(40.8)	(39.1)	(39.2)	(39.2)
3.6		4.0	4.2	3.9	3.9	4.0	4.1	4.4	4.8	5.7	
자 체 사 업	0.3	0.2	0.3	0.3	0.4	0.2	0.2	0.2	0.1	0.5	
기 타											

주: 1. 사회보장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예산의 합임
 2. 중앙정부 사회보장 예산은 「나라살림 예산개요」상의 자료이며 총계 기준임
 3. 지자체 사회보장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상의 자료이며 순계 기준임
 출처: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2012 각 연도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3~2017 각 연도
 3.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2008~2017 각 연도

<표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조원, %)

연도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보건 분야 국고보조금	비중
2008	23.7	11.4	48.1
2009	26.5	13.1	49.4
2010	29.7	14.6	49.2
2011	30.6	15.5	50.7
2012	32.0	16.5	51.6
2013	34.2	18.7	54.7
2014	37.7	22.6	59.9
2015	41.8	25.7	61.5
2016	43.0	27.1	63.0
2017	44.1	28.2	63.9

주: 1. 총지출 규모는 「나라살림 예산개요」상의 자료로 총계 기준임
 2. 지자체 세출 및 국고보조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상의 자료로 순계 기준임
 출처: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2012 각 연도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3~2017 각 연도
 3.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2008~2017 각 연도

복지전달 체계상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선정,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등 대부분의 복지사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등 현물급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특히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문 기능의 적절한 지방이양은, 복지사무를 제공하고 민간위탁기관 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재정분권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국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성 복지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형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현행 국고보조금 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형편이다.

현행 복지부문의 국고보조금 체계 개편은 국고보조율 개편과 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 노인과 영유아 등 대상자별 접근하여 중앙과 지방이 복지사업에 대한 책임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 기능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해외 국가들에서도 사회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둔다거나 노인에 대한 연금 등은 중앙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기능이 구분되는 경우를 왕왕 관찰할 수 있다. 국가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헌법적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연금이나 현금성 급여는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지방정부가 서비스나 실업 및 고용 관련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관찰되곤 한다. <표 3>은 현행 사회보장 부문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초생활 보장과 기초연금의 중앙정부 부담이 많고, 영유아 관련 서비스 부문의 지방비 부담이 많은 것은 이러한 원칙과 상당히 상응한다고 보인다.

복지지출의 유형별로 볼 때, 현금급여는 중앙정부의 재원분담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등 현물급여는 지방의 사업시행, 관리, 운영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지방에 책임과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는 약 6:4 정도로 사회서비스 및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은 해외 국가와는 달리 현물급여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재정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

**현행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체계의
개편은 국고보조율의
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다.**

**현금급여는 중앙정부의
재원분담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등 현물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다. 이는 서비스 수준의 지역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앙-지방 간 기능이양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체재원 확보 등 지방세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등 현물급여 중에서도 장애인, 정신지체인 돌봄 등 외부성이 높고 지역이 기피하는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재원분담 비율을 높이되, 보육서비스나 각종 돌봄서비스 등 지역주민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사회서비스 등 현물급여 중 적정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중앙과 지방의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도 많이 해소하고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나 각종 돌봄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의 매칭비 이외에도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중앙과 지방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 국가의 경우도 대체로 아동, 교육 등은 지자체가, 노인에 대한 연금 등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모두 지방에 이양하는 「사회서비스법」 개혁을 일찍부터 이루어 왔다. 공공부조를 지방이 담당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배경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공부조의 대상을 근로 가능한 근로 빈곤층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를 담당하여 공공부조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내보내기 위한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대상자의 대부분이 근로 무능력자, 노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의미가 약하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중앙정부가 국민생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은 사무의 기능이양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 국고보조율의 재조정도 앞에서 논의한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부조와 현금성 급여보다는 서비스 지원의 지방비 비율을 높이되,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향을 강구할 수 있다. 적절한 기능이양과 재원분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앙정부 책임하의 기초생활 보장급여나 기초연금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오히려 상향하므로 중앙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지방분권 강화기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때 공공부조와 같이 국

민생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의 설정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추진하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보조율이 평균적으로 90%에 달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사업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보조율을 100%로 상향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많이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보조율을 상향해도 무방하다. 다만 보육서비스, 돌봄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의 경우 지방의 역할이 매우 주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구구조상 및 소득계층별 특수 수요상)이므로, 사회서비스는 사무와 재원을 지방이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전면적 지방이양이 어려운 경우 전반적인 재정분권의 상황을 보면서 현행 국고보조금을 포괄 보조화할 필요가 있다. 포괄 보조 시에는 아동군(교육·보육서비스), 노인군(돌봄서비스 등) 등 기능별로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무와 재원을
지방이양하는 것을
고려하되,
전면적 지방이양이
어려운 경우
전반적인 재정분권의
상황을 보면서
포괄 보조화할
필요가 있다.**

<표 3> 사회보장 부문 주요 국고보조사업 자원분담 현황

(단위: 십억원, %)

세부 사업	2013년			2015년			2017년			보조율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기초생활 급여	3,311	866	4,177	3,963	991	4,953	4,741	993	5,734	서울 50(±10) 지방 80(±10)
	(79.3)	(20.7)	(100.0)	(80.0)	(20.0)	(100.0)	(82.7)	(17.3)	(100.0)	
의료급여	4,247	1,354	5,601	4,533	1,452	5,985	4,798	1,566	6,364	서울 50 지방 80
	(75.8)	(24.2)	(100.0)	(75.7)	(24.3)	(100.0)	(75.4)	(24.6)	(100.0)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98	2,660	5,259	3,047	1,507	4,554	3,129	1,479	4,609	서울 35(±10) 지방 65(±10)
	(49.4)	(50.6)	(100.0)	(66.9)	(33.1)	(100.0)	(67.9)	(32.1)	(100.0)	
가정양육 수당	881	954	1,835	1,102	577	1,678	1,224	611	1,835	서울 35(±10) 지방 65(±10)
	(48.0)	(52.0)	(100.0)	(65.6)	(34.4)	(100.0)	(66.7)	(33.3)	(100.0)	
기초연금	3,207	1,071	4,279	7,563	2,446	10,009	8,076	2,470	10,546	40~90
	(75.0)	(25.0)	(100.0)	(75.6)	(24.4)	(100.0)	(76.6)	(23.4)	(100.0)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205	232	437	282	318	599	389	442	832	서울 30 지방 50
	(46.9)	(53.1)	(100.0)	(47.0)	(53.0)	(100.0)	(46.8)	(53.2)	(100.0)	
장애인 연금	344	168	512	561	287	849	560	275	835	서울 50 지방 70
	(67.2)	(32.8)	(100.0)	(66.1)	(33.9)	(100.0)	(67.0)	(33.0)	(100.0)	

<표 3>의 계속

(단위: 십억원, %)

세부 사업	2013년			2015년			2017년			보조율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107	53	160	131	65	196	133	65	198	서울 50 지방 70
	(67.1)	(32.9)	(100.0)	(66.9)	(33.1)	(100.0)	(67.0)	(33.0)	(100.0)	
장애인 활동 지원	368	191	559	453	234	686	531	278	810	서울 50 지방 70
	(65.8)	(34.2)	(100.0)	(66.0)	(34.0)	(100.0)	(65.6)	(34.4)	(100.0)	
합계	15,268	7,549	22,818	21,635	7,876	29,511	23,581	8,181	31,762	
	(66.9)	(33.1)	(100.0)	(73.3)	(26.7)	(100.0)	(74.2)	(25.8)	(100.0)	

주: 1. 보조율이 (±10)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10),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10)를 의미함

2. 기초연금의 국가부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주도와 노인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됨(「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3.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 수당의 국고보조율은 2014년 1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됨

4. 기초생활 급여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 급여의 합이며, 2017년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국비 및 지방비 내역은 e나라도움의 자료를 참조함

출처: 1. 보건복지부, 「2013년 국고보조금 현황」, 2013

2.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2015

3. 보건복지부, 「2017년 국고보조금 현황」, 2017

4. e나라도움, 「보조사업 현황」, <http://opn.gosims.go.kr/opn/ih/ih001/getIH001002QView.do>, 검색일자: 2018. 8. 20.

5.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검색일자: 2018. 8. 20.

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27389,20160726\)](http://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27389,20160726)), 검색일자: 2018. 8. 20.

Ⅲ. 해외 국가의 중앙-지방 간 복지 기능과 자원분담

1. 해외 국가 복지지출 수준과 정부 간 지출구조

OECD 국가의 복지지출 평균은 GDP 대비 20.7%(OECD 공공사회복지 지출 기준, 2015년)이며, 현금급여 지출 평균은 GDP 대비 약 12.4%, 현물급여는 GDP 대비 약 8.3%로 현물에 비해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금급여가 약 3.9%, 현물급여가 약 5.8%로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물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전달체계하에서 하위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주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의 필요성이 현금급여에 비해 더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지방분권과 더불어 사무와 자원부담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경향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현금급여는 중앙정부가, 현물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정립된 국가들도 많다. 현물서비스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사업에서 사무 기능과 재원의 이양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여지는 있지만, 현금급여 비중이 낮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지방의 자원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OECD 국가 중 복지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약 30.6%에 달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북구 국가(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경우도 21.2~28.5%의 높은 복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주의 복지레짐을 보이고 있는 영미형 국가의 경우 영국은 21.6%로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고, 미국은 18.7%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도 복지지출은 22.9%로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다(<표 4> 참조).

해외 국가들의 경우 지방분권과 더불어 사무와 자원부담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경향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현금급여는 중앙정부가, 현물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정립된 국가들도 많다.

<표 4> OECD 회원국의 급여 형태별(현금 및 서비스) 복지지출 현황(2015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구분	공공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현물급여 (Spending on social service)	현금급여 (Spending on cash benefits)
호주	18.7	9.5	9.2
오스트리아	26.8	8.5	18.3
벨기에	28.6	10.4	18.2
캐나다	16.8	8.2	8.6
칠레	11.1	6.4	4.7
체코	20.0	7.1	12.9
덴마크	27.2	13.4	13.8
에스토니아	15.7	5.4	10.3
핀란드	28.5	10.9	17.6
프랑스	30.6	11.4	19.2
독일	24.1	10.4	13.7
그리스	27.7	7.4	20.3
헝가리	21.3	6.9	14.4
아이슬란드	16.6	9.8	6.8
아일랜드	19.3	7.3	12
이스라엘	16.1	7.4	8.7
이탈리아	28.2	7.8	20.4

우리나라는
 현금급여가 3.9%,
 현물급여가 5.8%로
 OECD 국가 평균과는 달리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의 비중이
 높다.

<표 4> 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구분	공공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현물급여 (Spending on social service)	현금급여 (Spending on cash benefits)
일본	22.9	10.7	12.2
한국	9.7	5.8	3.9
라트비아	14.2	3.7	10.5
룩셈부르크	22.6	8.0	14.6
멕시코	7.4	4.7	2.7
네덜란드	22.0	10.2	11.8
뉴질랜드	19.4	9.7	9.7
노르웨이	21.2	10.4	10.8
폴란드	8.6	5.3	3.3
포르투갈	25.0	6.6	18.4
슬로바키아공화국	17.9	6.7	11.2
슬로베니아	23.6	7.3	16.3
스페인	25.7	8.2	17.5
스웨덴	26.0	14	12
스위스	18.6	8.2	10.4
터키	13.4	4.5	8.9
영국	21.6	10.9	10.7
미국	18.7	9.4	9.3
OECD 평균	20.7	8.3	12.4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검색일자: 2018. 8. 14.

<표 5>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캐나다 및 한국 등 4개 국가를 제외한 31개국의 일반정부 복지지출 대비 지방정부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7%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일반정부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2017년)로 OECD 31개국 평균보다 대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나라살림 등 국내 자료).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단체 세출책임이 전체 세출책임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 절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대

부분이 법정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이다. 덴마크의 경우 지방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웨덴도 48.8%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북구 국가 중에서도 핀란드 지방정부 복지지출은 일반정부의 36.2%, 노르웨이는 24.5%로 OECD 평균보다는 높으나 덴마크나 스웨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는 일반정부 대비 지방정부의 총지출 수준이 63.8%로 캐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비중(87.5%)은 총지출 비중(63.8%)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이 큰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지출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는 현저히 낮음),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세출부담에 비하여 복지지출의 지방정부 부담 수준이 낮은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반정부 복지지출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GFS 기준)이 약 6.9%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이 GDP의 약 26.1%로 대부분의 복지지출이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재원조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정부 대비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비중은 지방정부 총지출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복지지출 부담이 전반적인 세출부담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지방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로는 뉴질랜드가 있는데, 뉴질랜드의 지방정부 복지지출은 0%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정부 총지출이 약 11.5%로 지방정부의 세출책임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전반적 세출부담 수준에 비해서도 복지지출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정부 대비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비중은 지방정부 총지출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복지지출 부담이 전반적인 세출부담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일반정부 복지지출 대비
지방정부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34.4%로
OECD 평균(캐나다,
한국 등 4개국) 19.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 중앙-지방 재원분담 현황(일반정부 대비, 2015년)

(단위: %)

구분	일반정부 복지지출 대비 지방정부 복지지출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정부 총지출	일반정부 복지지출 대비 사회보장기금
호주	30.5	-	58.2
오스트리아	28.8	34.5	65.2
벨기에	26.3	49.4	26.9
체코	11.7	27.0	7.8
덴마크	87.5	63.8	29.3
에스토니아	12.0	23.4	60.9
핀란드	36.2	40.6	80.3
프랑스	6.9	20.1	71.9
독일	22.3	47.5	71.7
그리스	1.8	6.4	72.9
헝가리	5.2	15.6	47.3
아이슬란드	18.8	30.2	-
아일랜드	4.4	7.7	51.3
이스라엘	6.1	13.7	70.2
이탈리아	26.7	28.9	81.5
일본	24.7	39.7	60.1
라트비아	13.2	24.4	76.3
룩셈부르크	2.6	10.9	70.5
네덜란드	15.5	31.8	-
뉴질랜드	0.0	11.5	-
노르웨이	24.5	32.9	81.0
폴란드	17.7	30.8	49.6
포르투갈	3.4	12.2	64.9
슬로바키아	3.4	16.5	75.7
슬로베니아	8.4	18.7	61.2
스페인	31.1	50.0	23.3
스웨덴	48.8	49.5	61.7
스위스	41.9	61.7	58.4
터키	0.7	10.3	-
영국	16.9	24.9	-
미국	32.3	48.5	16.9

주: 1. OECD 35개국 중 정부기능별 지출(COFOG)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4개국(캐나다, 칠레, 한국, 멕시코)을 제외한 31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
 2. 지방정부 지출은 Local governments와 State governments를 합산
 출처: IMF Data,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
<http://data.imf.org/?sk=a0867067-d23c-4ebc-ad23-d3b015045405&slid=1409151240976>, 검색일자: 2018. 8. 13.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 복지지출은 일반정부의 약 24.7%로 우리나라보다는 지방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지방정부 총지출 비중은 39.7%로 복지지출에 대한 세출책임이 전반적인 지방정부 지출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해외 국가 복지지출의 정부 간 자원분담

해외 국가 복지지출의 정부 간 자원분담 수준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28개국의 지방정부 자원분담 비중은 평균 약 14%, 중앙정부의 평균적 분담 비율은 약 35.5%로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분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에서 사회보장기여금(기업+가계+기금)의 복지재원 평균 분담 비중은 약 49.5%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한 자원분담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및 동유럽 국가(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의 지방정부 복지지출 분담 비중은 대체로 1%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스웨덴(39.7%), 덴마크(30.6%), 스페인(35.2%)의 경우 복지지출에 대한 지방정부 분담률이 3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이 87.5%로 높은 것에 비하면, 지방정부의 자원분담 비중 30.6%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덴마크 지방정부의 세입 비중이 일반정부 세입의 약 6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복지지출 분담률도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스웨덴은 지방의 복지지출 세출 비중이 48.8%였던 것에 비추어 지방정부 자원분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세출과 가장 가까운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21%), 핀란드(27.3%)의 경우 복구 국가임에도 지방정부 분담률이 대체로 20%대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인 독일의 경우도 지방정부 복지지출 분담액은 약 18.6%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대표적인 사회보험 위주의 국가로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분담률이 58.4%로 높고, 중앙정부는 복지지출의 약 21.6%를 분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분담액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세원배분 결정이 헌법과 법률 등에 명시된 국가이다. <표 8>에 의하면 독일의 지방정부 세입 수준이 일반

유럽연합 28개국의 지방정부 자원분담 비중은 평균 약 14%, 중앙정부의 평균적 분담 비율은 약 35.5%로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분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부담은 43.6%
정도로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부담 비율이
지방자체단체보다
약간 높다. 전반적인
세입구조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재원부담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약 47.2%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반적인 세입 비중에 비해서도 지방 정부의 복지지출 분담액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OECD 기준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경우 일반정부 복지 지출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GFS 기준)은 약 6.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사회보장기금이 GDP의 약 26.1%로 대부분의 복지지출이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재원조달되고 있다. Eurostat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은 38.4%이며, 사회보장기여금(social contribution)이 53.6%, 지방정부 부담이 약 7%로 지방정부의 재원분담률은 낮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이 크데,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부담금이 32%, 사회보장기금이 2.3%, 개인과 가계부문 기여금이 약 20.8%를 차지하여 기업의 부담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2017년 기준 약 7.7:2.3인데,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52조 6천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22조 9,500억원(지방비 17조 2,300억원+자체사업비 5조 7,2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부담은 43.6% 정도로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부담 비율이 지방자체단체보다 약간 높다. 전반적인 세입구조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재원부담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회보장재원 부담 주체별 배분 현황(2014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구분	총계	기업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사회보장 기금	가계	비영리 단체	기타
벨기에	30.6	9.3	10.7	2.9	1.6	6.1	0.0	0.0
불가리아	20.1	5.1	10.5	0.6	0.0	3.8	0.0	0.0
체코	20.5	9.5	5.8	0.2	0.1	4.8	0.0	0.0
덴마크	34.6	4.0	17.2	10.6	0.0	2.7	0.0	0.0
독일	30.6	8.3	6.6	5.7	0.1	9.5	0.5	0.0
에스토니아	14.7	11.8	2.4	0.2	0.0	0.2	0.0	0.0
아일랜드	21.2	5.4	13.4	0.6	0.0	1.8	0.0	0.0
그리스	26.0(p)	5.7(p)	13.4(p)	0.6(p)	0.4(p)	5.9(p)	0.0	0.0(p)

<표 6> 의 계속

(단위: % of GDP)

구분	총계	기업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사회보장 기금	가계	비영리 단체	기타
스페인	24.4(p)	7.8(p)	4.7(p)	8.6(p)	0.1(p)	3.2(p)	0.0	0.1(p)
프랑스	34.1	10.4	13.1	2.4	0.8	7.1	0.3	0.0
크로아티아	22.1	6.2	7.8	0.4	0.0	7.7	0.0	0.1
이탈리아	30.7(p)	7.4(p)	13.5(p)	4.8(p)	0.1(p)	4.9(p)	0.0	0.0(p)
키프로스	21.6	5.0	12.1	0.1	0.0	4.2	0.2	0.0
라트비아	14.5	4.0	6.2	0.9	0.7	2.6	0.0	0.1
리투아니아	14.9	5.5	4.6	2.0	0.1	2.7	0.0	0.1
룩셈부르크	26.0	6.9	12.7	0.3	0.0	3.8	0.2	2.0
헝가리	20.4	5.1	9.1	0.3	0.0	5.7	0.2	0.0
몰타	18.3	1.7	14.1	0.0	0.0	2.6	0.0	0.0
네덜란드	34.3	11.2	6.7	2.6	0.1	11.7	0.0	2.1
오스트리아	29.6	9.8	7.1	4.9	0.0	7.7	0.0	0.0
폴란드	18.9	5.5	8.0	1.5	0.0	3.8	0.0	0.0
포르투갈	27.6	6.8	15.0	0.3	0.0	4.6	0.4	0.5
루마니아	14.9	3.0	5.5	0.8	3.2	2.3	0.1	0.1
슬로베니아	24.3	6.6	7.4	0.8	0.0	9.5	0.0	0.0
슬로바키아	19.5	6.6	6.9	1.1	0.3	4.4	0.2	0.0
핀란드	33.3	6.8	11.3	9.1	1.7	4.3	0.1	0.0
스웨덴	31.7	9.0	6.4	12.6	0.6	2.9	0.2	0.0
영국	32.3	10.2	17.0	1.8	0.0	3.3	0.0	0.0
아이슬란드	28.8	6.6	12.1	4.8	3.2	1.9	0.3	0.0
노르웨이	26.7	8.4	8.7	5.6	0.0	4.1	0.0	0.0
스위스	31.6	13.1	3.3	4.2	0.0	11.1	0.0	0.0
세르비아	23.7	5.2	11.1	0.0	0.0	7.3	0.0	0.1
터키	13.8	3.4	6.6	0.0	0.0	3.7	0.1	0.0
유로지역 (19개국)	30.4(p)	8.6(p)	9.6(p)	4.5(p)	0.3(p)	7.0(p)	0.2(p)	0.2(p)
유럽연합 (28개국)	30.1(p)	8.6(p)	10.7(p)	4.2(p)	0.3(p)	6.0(p)	0.2(p)	0.1(p)

주: (p)는 잠정치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social-protection/data/database>, 검색일자: 2018. 7. 20.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및 동유럽 국가(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의 지방정부 복지지출 분담 비중은 대체로 1%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스웨덴(39.7%), 덴마크(30.6%), 스페인(35.2%)의 경우 복지지출에 대한 지방정부 분담률이 3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기업+가계+기금)의
복지재원 평균 분담
비중은 약 49.5%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한 재원분담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회보장재원 부담 주체별 배분 현황(비중, 2014년 기준)

(단위: %)

구분	총계	기업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사회보장 기금	가계	비영리 단체	기타
벨기에	100.0	30.4	35.0	9.5	5.2	19.9	0.0	0.0
불가리아	100.0	25.4	52.2	3.0	0.0	18.9	0.0	0.0
체코	100.0	46.3	28.3	1.0	0.5	23.4	0.0	0.0
덴마크	100.0	11.6	49.7	30.6	0.0	7.8	0.0	0.0
독일	100.0	27.1	21.6	18.6	0.3	31.0	1.6	0.0
에스토니아	100.0	80.3	16.3	1.4	0.0	1.4	0.0	0.0
아일랜드	100.0	25.5	63.2	2.8	0.0	8.5	0.0	0.0
그리스	100.0	21.9	51.5	2.3	1.5	22.7	0.0	0.0
스페인	100.0	32.0	19.3	35.2	0.4	13.1	0.0	0.4
프랑스	100.0	30.5	38.4	7.0	2.3	20.8	0.9	0.0
크로아티아	100.0	28.1	35.3	1.8	0.0	34.8	0.0	0.5
이탈리아	100.0	24.1	44.0	15.6	0.3	16.0	0.0	0.0
키프로스	100.0	23.1	56.0	0.5	0.0	19.4	0.9	0.0
라트비아	100.0	27.6	42.8	6.2	4.8	17.9	0.0	0.7
리투아니아	100.0	36.9	30.9	13.4	0.7	18.1	0.0	0.7
룩셈부르크	100.0	26.5	48.8	1.2	0.0	14.6	0.8	7.7
헝가리	100.0	25.0	44.6	1.5	0.0	27.9	1.0	0.0
몰타	100.0	9.3	77.0	0.0	0.0	14.2	0.0	0.0
네덜란드	100.0	32.7	19.5	7.6	0.3	34.1	0.0	6.1
오스트리아	100.0	33.1	24.0	16.6	0.0	26.0	0.0	0.0
폴란드	100.0	29.1	42.3	7.9	0.0	20.1	0.0	0.0
포르투갈	100.0	24.6	54.3	1.1	0.0	16.7	1.4	1.8
루마니아	100.0	20.1	36.9	5.4	21.5	15.4	0.7	0.7
슬로베니아	100.0	27.2	30.5	3.3	0.0	39.1	0.0	0.0
슬로바키아	100.0	33.8	35.4	5.6	1.5	22.6	1.0	0.0
핀란드	100.0	20.4	33.9	27.3	5.1	12.9	0.3	0.0
스웨덴	100.0	28.4	20.2	39.7	1.9	9.1	0.6	0.0
영국	100.0	31.6	52.6	5.6	0.0	10.2	0.0	0.0
아이슬란드	100.0	22.9	42.0	16.7	11.1	6.6	1.0	0.0
노르웨이	100.0	31.5	32.6	21.0	0.0	15.4	0.0	0.0
스위스	100.0	41.5	10.4	13.3	0.0	35.1	0.0	0.0
세르비아	100.0	21.9	46.8	0.0	0.0	30.8	0.0	0.4
터키	100.0	24.6	47.8	0.0	0.0	26.8	0.7	0.0
유로지역 (19개국)	100.0	28.3	31.6	14.8	1.0	23.0	0.7	0.7
유럽연합 (28개국)	100.0	28.6	35.5	14.0	1.0	19.9	0.7	0.3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social-protection/data/database>, 검색일자: 2018. 7. 20.

<표 8> OECD 국가 지방정부 세입 비중 및 지방세 비중(2015년)

(단위: %)

구분	일반정부 수입 대비 지방정부 수입	지방세 비중	
		조세부담률 대비	국민부담률 대비
호주	-	20.7	20.7
오스트리아	35.4	6.8	4.5
벨기에	49.2	18.4	12.6
캐나다	74.2	58.7	49.9
칠레	-	8.1	7.6
체코	28.8	2.1	1.2
덴마크	66.0	26.8	26.8
에스토니아	24.0	1.5	1
핀란드	41.4	33.4	23.7
프랑스	21.4	21	13.2
독일	47.2	50.2	31.3
그리스	7.7	3.4	2.4
헝가리	16.6	8.6	5.8
아이슬란드	29.4	28.4	25.6
아일랜드	9.0	2.9	2.4
이스라엘	15.0	9.7	8.1
이탈리아	31.5	23.6	16.5
일본	43.6	39.5	23.9
한국	42.3	24.6	18
라트비아	26.2	27.2	19.4
룩셈부르크	11.4	4.9	3.5
멕시코	53.6	6.7	5.8
네덜란드	32.9	6.1	3.8
뉴질랜드	11.1	6.8	6.8
노르웨이	28.7	21.1	15.3
폴란드	32.9	20.9	12.9
포르투갈	14.4	9.8	7.2
슬로바키아	17.9	3.6	2
슬로베니아	20.6	15.9	9.6
스페인	53.4	36.1	23.9
스웨덴	48.7	46.4	36
스위스	60.5	52.6	39.6
터키	10.8	13.6	9.6
영국	27.4	6	4.9
미국	51.8	43.3	33
OECD 평균	-	36.5	26.8

주: 지방정부 수입 및 지출은 Local governments와 State governments를 합산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 검색일자: 2018. 8. 14.

조세부담률 대비
지방세 비중의
OECD 평균은 36.5%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자원분담에 있어 연방정부의 책임과 자원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은 정부 간 역할 분담에서도 분권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3. 해외 국가의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자원분담 사례

가. 미국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자원분담에 있어 연방정부의 책임과 자원분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총세출 구조는 약 6:4(2017년)인 것에 반해, 연금,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출은 약 8:2로 총지출에 비해 복지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분담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서비스, 재해보험 등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연방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연방정부의 책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나. 독일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은 “국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한다는 기치하에 정부 간 역할 분담에서도 분권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고용 및 소득보장을, 주정부는 교육 및 의료 보장을, 기초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책임진다. 독일은 사회보험이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자원분담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상당하지만 점차 자원분담의 중심이 정부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주의 체제하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기능과 자원분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보장의 영역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립적 영역 수행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는 사회보장사업 등의 경우 자원부담의 일차적 책임은 연방정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도 연금이나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는 연방정부의 책임이 크고, 사회서비스와 실업 및 재해보험 등의 영역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2016년 독일 사회보장 제도별 재원분담

(단위: 백만유로)

제도	기업	연방	주	지방자치	사회보험	민간단체	가구	합계
연금보험	85,992	85,406	5,720	3,005	1,180	5,135	105,326	291,764
질병보험	61,490	15,912	1,655	2,231	817	3,569	137,005	222,677
요양보험	10,141	60	262	351	135	597	20,426	31,971
재해보험	10,126	306	75	1,911	79	74	1,741	14,312
실험보험	14,953	132	380	512	198	876	16,054	33,105
특수지역 보험 ¹⁾	5,942	5,327	135	951	29	127	48,362	60,872
공무원 부양제도 ²⁾	2,683	23,319	39,879	6,220	-	838	251	73,190
고용주 관련 제도 ³⁾	66,444	2,594	8,198	8,191	1,376	3,485	8,014	98,302
보상제도 ⁴⁾	-	2,083	494	35	-	-	-	2,611
아동수당/ 가족급여 조정	-	19,202	18,458	6,515	-	-	-	44,175
양육급여 및 부모수당	-	6,480	297	-	-	-	-	6,777
구직자기초 보장 급여	-	34,244	-	8,451	-	-	-	42,696
실업구제 및 고용촉진	479	160	1	-	-	-	-	640
교육 및 훈련 촉진, 추가훈련 부조	-	2,066	167	-	-	-	-	2,237
사회부조	-	7,418	7,013	25,090	-	-	-	39,521
아동 및 청년 복지서비스	-	604	4,960	32,947	-	-	-	38,511
주택수당	-	573	635	33	-	-	-	1,242
합계	258,250	205,886	88,328	96,442	3,814	14,700	301,425	968,844

주: 1) 특수지역 보험: 농민고령 부조제도, 연기금, 민간고령자 급부 등

2) 공무원 부양제도: 연금, 가족수당, 기타 수당

3) 고용주 관련 제도: 지속적 보상금 지급, 피고용자 연금제도, 보충보험 및 여타 고용주 급여

4) 보상제도: 사회보장, 부담 조정, 전쟁배상, 기타 보장

출처: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Sozial Bericht 2017, 2017, T-19

독일의 경우도 연금이나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는 연방정부의 책임이 크고, 사회서비스와 실업 및 재해보험 등의 영역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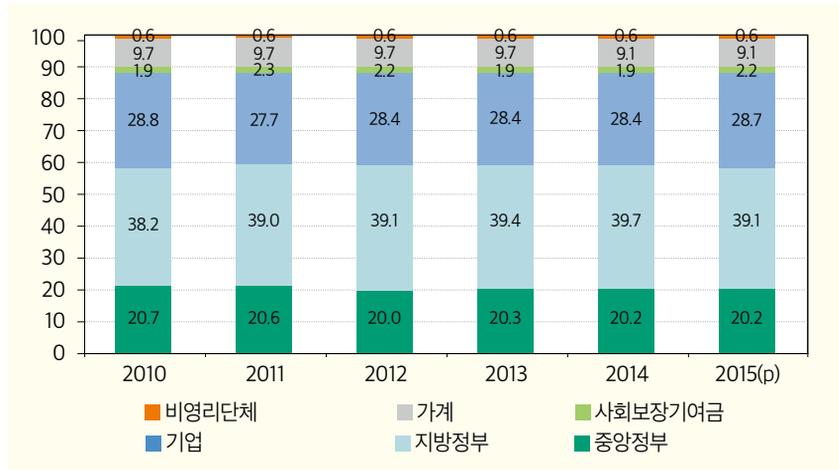
스웨덴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방소득세 등 자체 재원의 비중이 높은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자원분담의 책임을 지는 등 지방의 복지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스웨덴

스웨덴은 1980년대에 사회부조와 사회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각 제도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 및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상당히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앙정부는 사회보험 및 수당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보건 및 의료료, 기초지자체는 아동, 보육, 노인복지 등 광범위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방소득세 등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은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자원분담의 책임을 지는 등 지방의 복지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스웨덴 사회보장자원 부담 주체별 비중

(단위: %)



주: (p)는 잠정치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social-protection/data/database>, 검색일자: 2018. 5. 30.

라. 영국

영국은 재정분권 수준에서 볼 때 매우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GDP 대비 지방세 비중은 1.6%(2014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일반정부 대비 지방정부 지출도 25.2%(2014년)로 OECD 평균 43%에 비추어 매우 낮은 재정분권의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중앙집권형 국가로, 중앙정부가 의료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전체 사회복지재원 중 중앙정부재원은 약 53%, 민간기업 31%, 가계 10%이며, 지자체재원은 불과 6%의 낮은 자체재원만을 담당하고 있다(2014년). 사회복지 재원분담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큰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재원의 많은 부분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표 10> 영국 사회보장재원 부담 주체별 배분 현황 추이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사회보장수입	23.7	31.3	34.2	34.5	33.3	32.2	32.9
기업	6.6	11.3	11.0	10.7	10.4	10.1	9.6
중앙정부	12.0	14.8	18.2	18.5	17.7	17.0	18.3
지방정부	0.7	1.7	1.7	1.9	1.7	1.8	1.8
사회보장기여금	0.0	0.0	0.0	0.0	0.0	0.0	0.0
가계	3.9	3.4	3.3	3.5	3.4	3.3	3.2
비영리단체	0.4	0.0	0.0	0.0	0.0	0.0	0.0

주: 1) 2015년도는 잠정치

2)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로 인해 합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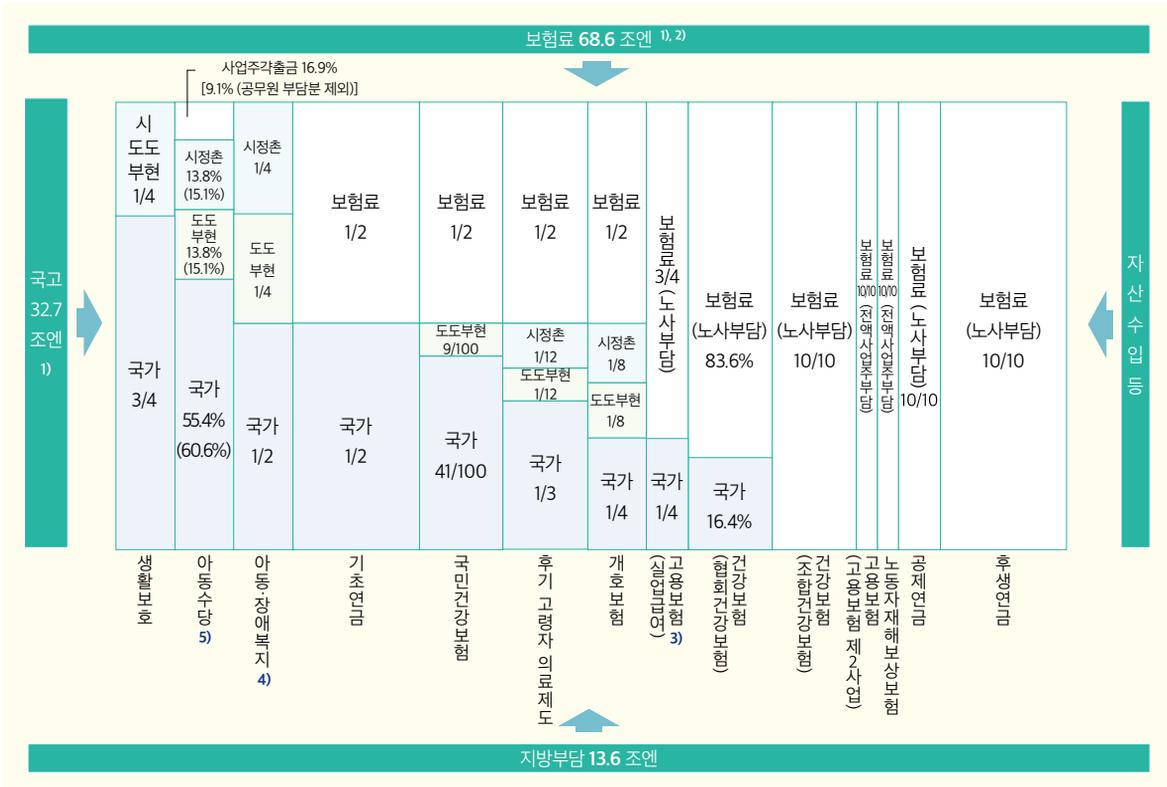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social-protection/data/database>, 검색일자: 2018. 12. 11.

마.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한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은 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연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보육소 운영, 개호보험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 사업의 운영 등 보육, 개호, 의료에 관한 운영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연금을 제외한 사회보장 부문 지출의 중앙 대 지방의 비율을 보면 2.9:7.1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비중이 높다. 재원분담은 국가 대 지방의 비율이 7.1:2.9로 중앙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사업의 25%, 아동수당의 27.6%, 아동·장애복지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후기고령자 보험이나 개호보험 등 보험료 수입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제외한 2분의 1의 금액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은 없고,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제외한 2분의 1 금액 중 9%, 후기고령자 보험은 16.7%, 개호보험은 5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큰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도 재원의 많은 부분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연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보육, 개호, 의료에 관한 운영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그림 2] 일본 사회보장제도별 재원분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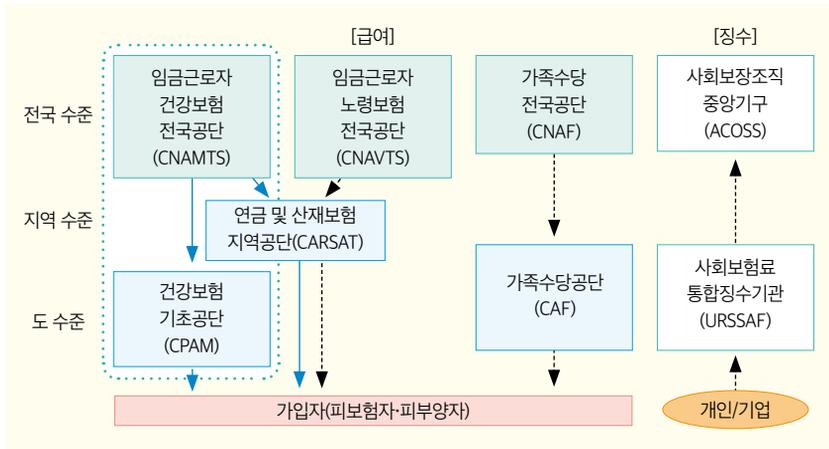
주: 1) 보험료, 국고, 지방부담의 금액은 2017년 당초예산 베이스
 2) 보험료는 사업주 각출금을 포함
 3)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당분간 국고부담액(1/4)의 10% 상당 금액만 부담
 4) 아동·장애 복지 중 아동입소시설 등 설치비의 재원분담은 원칙적으로 국가 1/2, 도도부현·지정도시·중심도시·아동상담소설치도시 1/2로 규정되어 있음
 5)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베이스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 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괄호 안에 표시
 출처: 일본 재무성, 社会保障について, 2018. 4.

바. 프랑스

프랑스는 거대한 사회보장기금이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공공복지지출 수준을 보인다. 별도의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과 건강보험, 연금, 가족수당 및 산재보험 등 각 제도별로 별도의 운영조직인 공단이 있으며, 보험료 징수에서부터 급여의 지출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아닌 별도의 사회보장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자와 분리된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구를 두고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수당 등 사회보장 부문의 모든 보험료와

일반사회보장분담금(CGS) 등 사회보장 관련 조세까지 총괄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보험료와 조세는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COSS)로 보내지고 여기서 징수한 보험료를 총합하여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연금의 각 운영단위로 보험자 기관에 배분하고 있다.

[그림 3]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금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프랑스」 2012에서 재인용
원자료: J.J. Dupeyroux, 2011.

이렇다 보니 사회보장제도의 재원분담과 기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도 미미하다. 특징적인 것은 개별 사회보장기금 존재하의 높은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와 피용자 간 분담 비율이 동등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대체로 고용주 부담률이 피용자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2015년의 경우 총복지지출의 61%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충당되고 조세는 37% 정도만 부담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여금 중 69%가 고용주 부담(자영업자 제외)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재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은 기금이 관할하지 않는 국민생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을 제공하는 몇몇 사회부조 사업들로서 맞춤형 자율수당(Allocation Personalisee d'Autonomie: APA) 및 활동연대수당(RSA) 등이 있다. 또한 기금이 담당하지 않는 노령, 장애인,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인 데파르트망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도별로 별도의 운영조직인 공단이 있으며 보험료 징수에서부터 급여의 지출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아닌 별도의 사회보장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분권화가
세입 측면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경우
일부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권한과 재정책임을
동시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서 재정분권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출 측면에서의 기능이양과 국고보조금의 재조정 필요성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입 측면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 추진되어 지방의 자체재원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경우, 현행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의 재조정과 사무 기능의 지방이양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부문 사업의 기능이양과 재원분담 조정도 필요하다.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국민생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의 성격이 강하여 중앙정부 주도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고려해야 하는 복지사업도 다수 존재한다.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부담이 일반 세입 수준에 비하여 수치적으로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현재로서는 복지지출에 대한 지방정부 부담(특히, 광역시 자치구와 같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세입 측면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경우 일부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권한과 재정책임을 동시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해외 국가들에서도 재정분권 이후에 사무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우를 왕왕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지출 재원분담에 있어 영미형 중앙집권방식에 가깝고 중앙이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재정분권 수준이 높아지면 복지부문의 재원분담과 사무 기능도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재정분권 수준이 높은 해외 국가들에서는 복지사업 중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범위가 넓은 것을 참조할 수 있다. 분권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방비 인상 등 국고보조율 재조정을 통해 조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방이양을 통한 사무 기능 재구도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2008~2017 각 연도.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Sozial Bericht 2017』, 2017, T-19.
- 박인화, 『복지재정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예산현안분석 제35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 보건복지부, 「2013년 국고보조금 현황」, 2013.
- _____,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2015.
- _____, 「2017년 국고보조금 현황」, 2017.
- 일본 재무성, 『社会保障について』, 2018. 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프랑스』, 2012.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2012 각 연도.
- _____,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3~2017 각 연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27389,20160726\)](http://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27389,20160726))
- _____,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검색일자: 2018. 8. 20.
- e나라도움, 「보조사업 현황」, http://opn.gosims.go.kr/opn/ih/ih001/getIH0010_02QView.do, 검색일자: 2018. 8. 20.
- J. J. Dupeyroux,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17e edition, 2011.
-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social-protection/data/database>, 검색일자: 2018. 5. 30.
- _____, ESSOROS database, <http://ec.europa.eu/eurostat/web/social-protection/data/database>, 검색일자: 2018. 7. 20.
- IMF Data,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http://data.imf.org/?sk=a0867067-d23c-4ebc-ad23-d3b015045405&sid=1409151240976>, 검색일자: 2018. 8. 13.
- OECD, National Accounts, <http://www.oecd.org/sdd/na/>, 검색일자: 2018. 8. 14.
- _____,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 검색일자: 2018. 8. 14.
- _____,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검색일자: 2018. 8. 14.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서론

미·중 사이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 부정적인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세계 경제성장은 G20을 중심으로 무난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01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초 전망 수준인 3%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ECD의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는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p 낮추며 글로벌 성장이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하며 2019년에도 3%를 소폭 하회하는 2.8%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경기전망 기관들도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 중후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므로 이를 크게 나쁘다고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복지 확대, 남북경협 지원 등 향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근본적인 세원의 크기가 성장하며 세제 강화를 통한 세수 확대가 아닌 자연적 세수 증가의 확대를 도모해야만 한다. 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입 확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재정지출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agskim@kipf.re.kr)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정책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오랜 기간 과거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들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 뿐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모호한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슈페터가 지적한 “창조적 파괴”의 범주를 벗어나는지 의문이다. 인간 지성의 한계로 인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과 결과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응해서 모든 제도를 서둘러 개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원활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오랜 기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혁신성장은 규제, 기업가 정신, 연구개발을 비롯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의 질 등 전통적인 물적 자본과 양적 노동 투입 이외의 모든 생산요소 및 법 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이 기업가의 새로운 이윤기회 실현 과정에 왕성히 활용되도록 부적절한 규제 및 법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며 더욱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혁신 과정이 선순환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연구개발에 의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은 혁신성장의 근본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성공적 연구개발 결과물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세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00년대 초반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세계 선두권에 도달한 지 십 년 가까이 됐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구개발 행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군의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현

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입 확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재정지출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전통적
정책수단인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총량과 정책방향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지난 몇 년간 저자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전통적 정책수단인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총량과 정책방향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II. 연구개발 지원정책 현황

1. 총량 지표를 이용한 국제 비교

가. 연구개발 국제 비교

우리나라의 2016년 총연구개발비는 69조 4천억원으로 GDP의 4.23% 수준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 2016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다. 2000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13조 8천억원 수준이었으며 당시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의 총연구개발비 규모 다음으로 큰 수준이었다. 2000년 이후 16년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절대 규모 면에서 다섯 배 정도 확대됐다. 같은 기간 중국의 총연구개발비가 약 22배 증가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에 이르는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큰 비용을 투자하며 오랜 연구개발의 역사를 갖고 있던 프랑스, 영국, 캐나다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규모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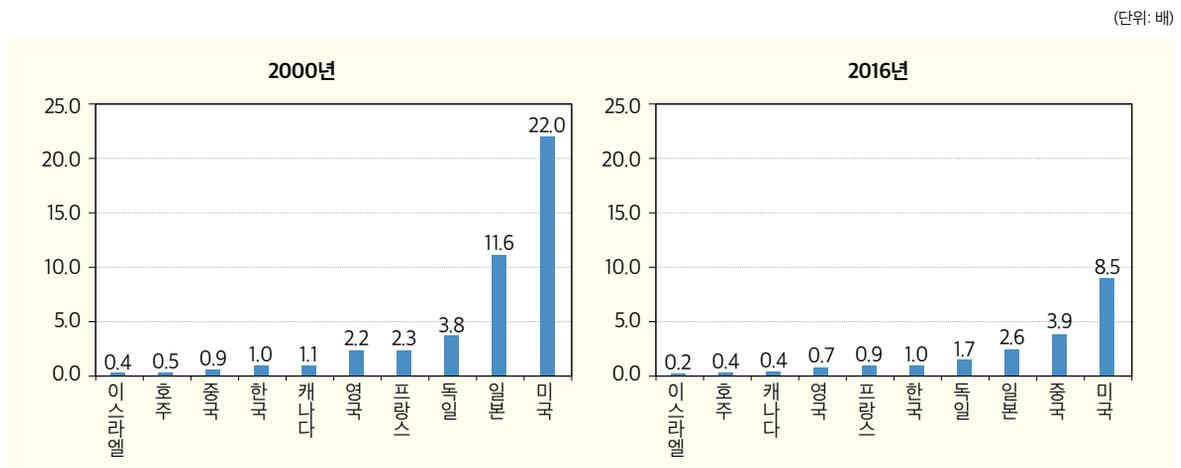
이러한 양적 확대의 결과로 2000년 이후 총연구개발비 절대 규모 측면에서 주요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규모 대비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규모의 배수는 중국을 제외하고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격차는 2000년 22배에서 2016년 8.5배로 축소됐다. 일본의 총연구개발비는 우리나라보다 2000년 11.6배나 컸으나 2016년에는 3.9배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다. 독일과의 총량 수준 격차는 2000년 3.8배 수준에서 2016년 1.7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캐나다, 영국, 프

1) 중국의 총연구개발비는 2000년 108억 2천만달러 수준이었으나 2016년까지 약 22배 성장하여 2016년 2,359억달러로 나타났다.

랑스의 경우 2000년 1.1~2.3배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보다 더 큰 규모를 투자했으나 2016년 해당 국가들의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의 0.4~0.9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00년 우리나라의 0.9배 수준에 불과하던 총연구개발비가 동 기간에 22배 성장하며 2016년 우리나라보다 3.9배 큰 수준의 총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주요국과 이러한 격차의 축소 양상은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가 괄목할 만한 양적 확대를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총연구개발비 규모보다 현저히 작은 수준의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G20 국가들 중 경제 규모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주요국과의 총연구개발비 규모 차이 비교



출처: OECD,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indicator), 2018a. doi: 10.1787/d8b068b4-en(Accessed on 22 September 201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경제 규모를 고려한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 양적 확대의 성과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0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중은 2.18%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4.23%를 보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총연구개발비 규모보다 현저히 작은 수준의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G20 국가들 중 경제 규모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중은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2000년

**연구개발 관련 총량
지표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연구개발 양적 확대를
달성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12%이던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소폭 상승하여 2016년 2.34%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2.18%에서 2016년 4.23%로 두 배가량 확대됐다.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급속한 비중 확대 추이를 보이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 비교 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 이후 OECD 평균의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예외적으로 중국은 총연구개발비가 2000년 이후 22배가량 확대됐고 GDP 대비 비중도 2000년 0.89%에서 2016년 2.11%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천명당 연구원 수에서도 우리나라 연구인력의 괄목할 만한 확대가 눈에 띈다.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2000년 상시근로자 1천명당 5.13명 수준으로 OECD 평균 6.14명을 하회했으나, 2005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13.8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OECD 평균 8.3명과 비교하여 근로자 수 1천명당 5.5명가량 더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과 비교하여 연구인력의 괄목할 만한 증가 양상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근로자 수 1천명당 연구원 수를 보이는 국가들로는 상시근로자 수 1천명당 14명 수준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17명 수준인 이스라엘이 있다.²⁾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교 대상 국가들의 연구원 수 추이는 2000년 이후 OECD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6년 또는 자료가 가용한 최근 연도에 근로자 수 1천명당 9명 안팎의 연구인력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2000년 근로자 수 1천명당 0.96명의 연구원 수를 보였으나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2.18명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국가들 중 하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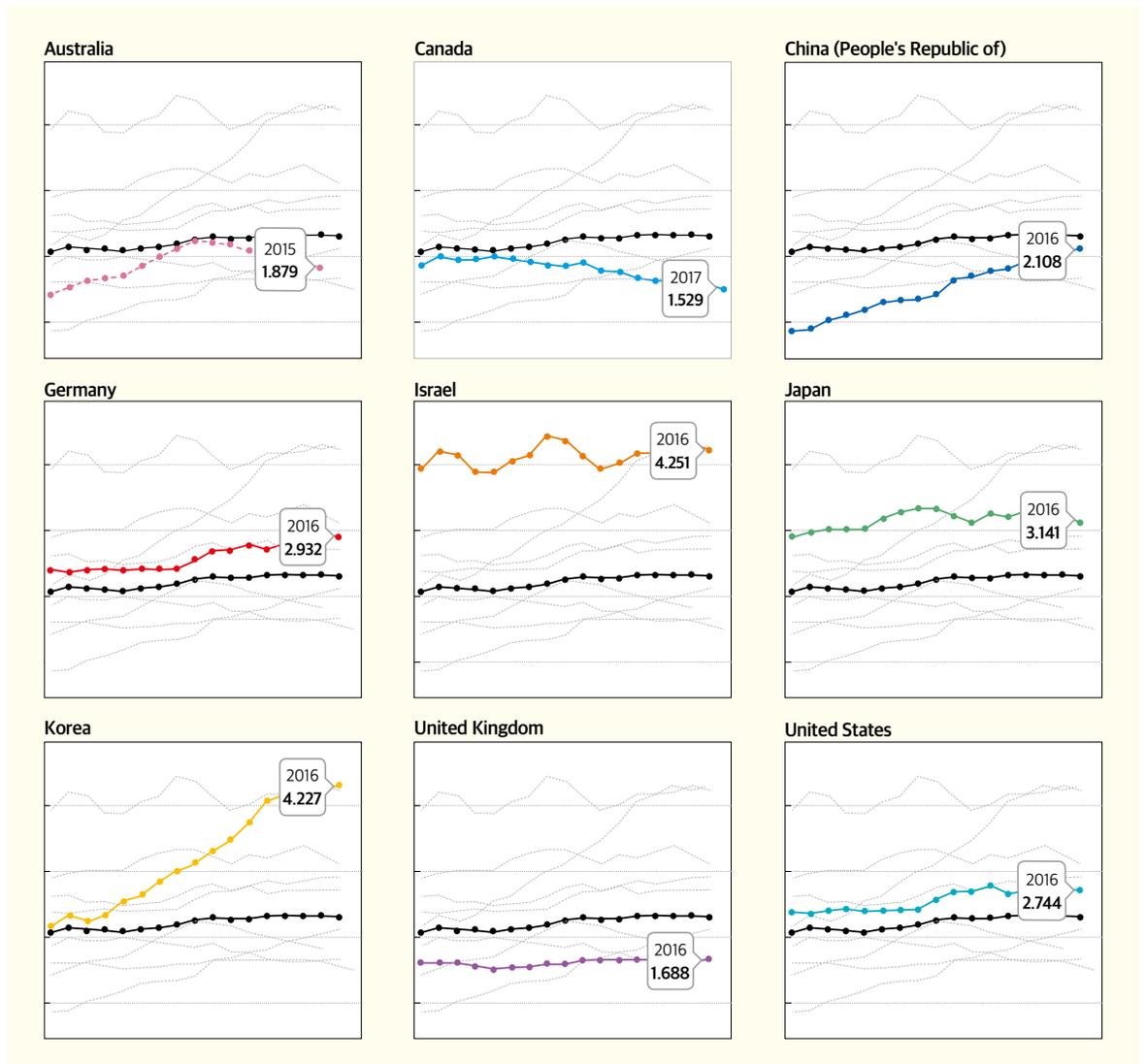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개발 총량 지표들의 추이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가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연구개발비는 2000년 대비 2016년에 다섯 배 정도 확대됐고,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5위권에 도달했으며, 2013년부터는 이스라엘과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에 이르렀다. 연구인력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

2) 이스라엘의 연구원 수 자료는 2011년과 2012년만 가용하여 2016년 수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2011년 이스라엘의 연구원 수는 근로자 수 1천명당 15.7명이었고 2012년 17.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2004년 17.3명 수준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4.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세적으로 근로자 수 1천명당 연구원 수가 증가한 덴마크의 경우 2001년 6.99명에서 2016년 14.9명으로 확대됐고 스웨덴의 경우 2001년 10.5명에서 2016년 14.4명으로 증가했다.

하여 2010년부터 세계 5위권에 도달했다. 이처럼 연구개발 관련 총량 지표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연구개발 양적 확대를 달성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림 2] 2000년 이후 주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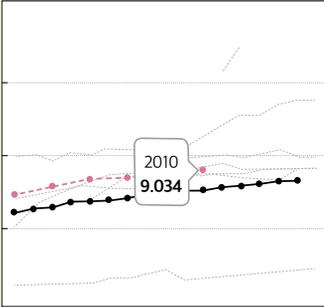


출처: OECD,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indicator), 2018a. doi: 10.1787/d8b068b4-en, 검색일자: 2018. 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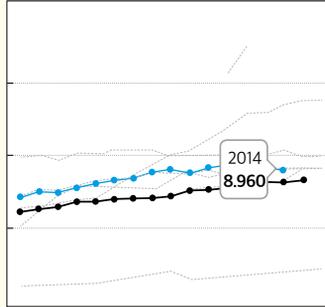
[그림 3] 2000년 이후 주요 OECD 국가들의 연구원 수 추이

(단위: 근로자 수 1천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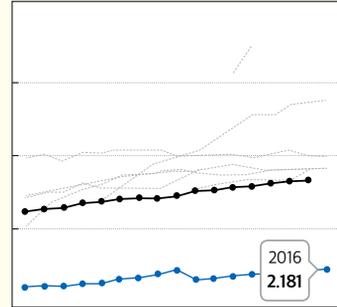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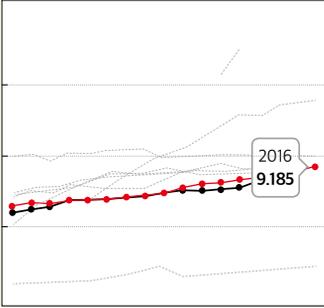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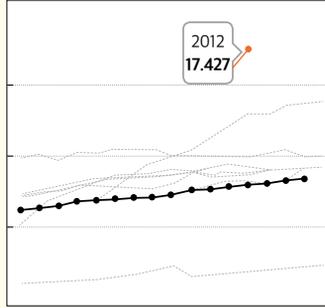
China (People's Republic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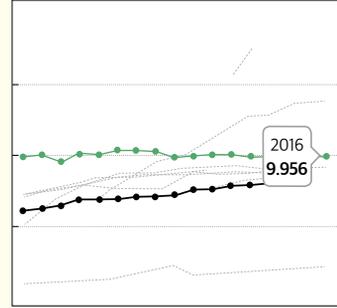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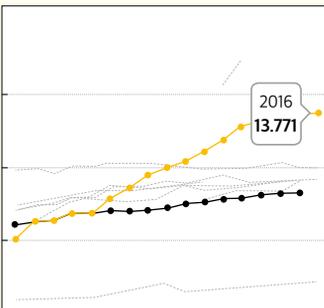
Isra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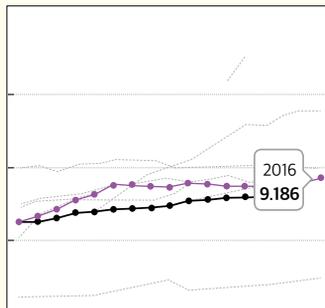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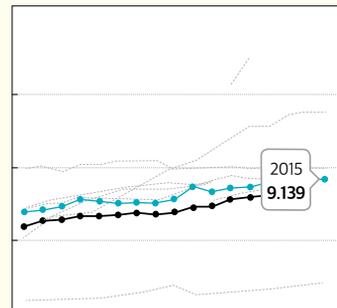
Kore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출처: OECD,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indicator), 2018a. doi: 10.1787/d8b068b4-en, 검색일자: 2018. 9. 22

나. 정부지원 수준 국제 비교

2000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4조 2천억원 수준으로 GDP의 0.59%에 불과했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2000년 35개 자료가 가용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16위에 해당하는 중위권 수준이었고 당시 35개 국가 평균 비중은 0.54% 수준이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참여정부 시기였던 2005년 동 비중은 0.85%로 확대되며 35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5위로 올라섰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연구개발 예산을 빠르게 확대한 결과로 2008년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은 1%에 달하게 됐고, 이후 줄곧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1·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최근 비교 연도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GDP 비중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연구개발 확대의 의지는 민간 연구개발비 확대를 유도하며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전체 총연구개발비 확대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연구개발 확대의 의지는 민간 연구개발비 확대를 유도하며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전체 총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개, %, 순위)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비교 국가 수	35	35	38	38	39	38	35
평균	0.54	0.56	0.59	0.63	0.60	0.59	0.58
최소	0.10	0.19	0.24	0.16	0.15	0.16	0.16
최대	0.95	1.00	1.00	1.11	1.16	1.20	1.17
한국	0.59	0.85	1.00	1.08	1.16	1.20	1.17
한국 순위	16	5	1	2	1	1	1
1위 국가	핀란드	미국	한국	핀란드	한국	한국	한국

주: 1. 비교 국가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이 가용한 35개 OECD 국가들과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국가들은 제외함
 2.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이므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진 국가가 1위임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8c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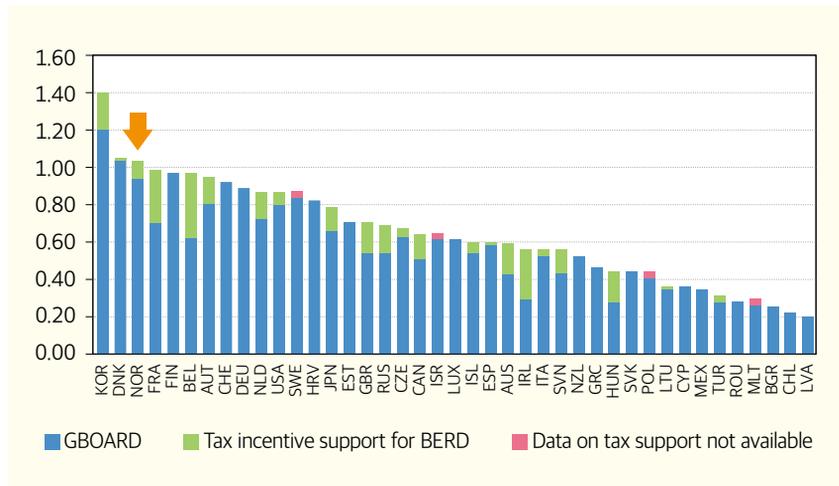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조세지원을 통한 사후적 정부지원을 포괄하지 않고 있으며, 출연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포괄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

OECD(2018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지원되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한 보고서가 OECD에서 발표됐다. OECD(2018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먼저 출연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와 기업들에 지원된 조세지출 규모를 합한 정부의 총연구개발 지원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1.4%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 1%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정부 연구개발 예산과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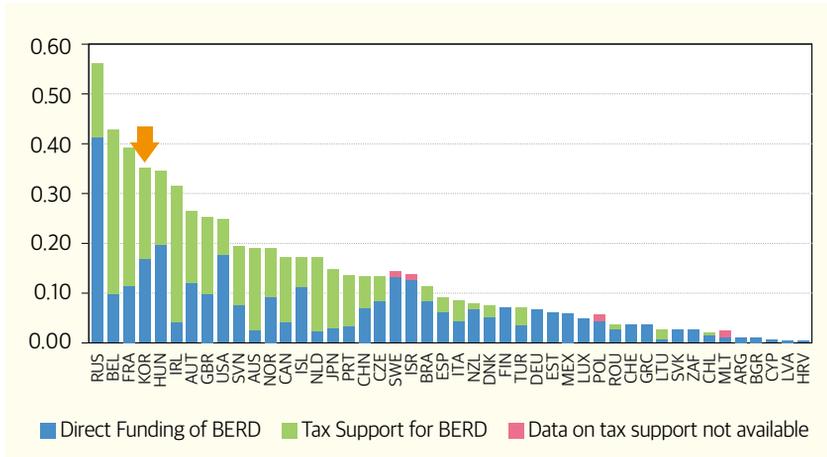


주: 1. GBOARD와 BERD는 각각 정부 연구개발 예산과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출을 나타냄
 2. 상기 지원 규모는 2015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의 GDP 대비 비중으로 계산한 결과임
 출처: OECD, OECD Time-Series Estimates of Government Tax Relief for Business R&D, 2018d, p.11, Figure 2.

이러한 정부의 총연구개발 지원 중에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과 사후적 조세지원 규모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도 비교 대상 국가들 중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림 5]에 나타난 2015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 지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0.17%로 0.39%의 러

[그림 7] 민간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

(단위: %)



주: 1. BERD는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출을 나타냄

2. 상기 지원 규모는 2015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의 GDP 대비 비중으로 계산한 결과임

출처: OECD, OECD Time-Series Estimates of Government Tax Relief for Business R&D, 2018d, p.10, Figure 1, Panel 1c.

활용도가 가장 높은 개발단계의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데 2018년 전망 기준 연간 2조 2천억원 수준의 조세지출 규모를 보이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원

가. 조세지원 현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들은 개발단계 지원제도, 사업화 및 성과단계 지원제도, 기타 지원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 준비단계의 조세지원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될 재원을 적립하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가 시행됐으나, 2013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현재는 경과규정으로 남아 있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개발단계의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데 2018년 전망 기준 연간 2조 2천억원 수준의 조세지출 규모를 보이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활용도가 큰 조세지원제도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2018년 연간 1,521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보이고 있다. 2016~2018년 평균 개발단계 지원제도의 조세지출 합계는 약 2조 4천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규모 2조 6천억원의 92.9%에 달하는 것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조세지원은 연구개발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 나타났다.

이외에 10개의 조세지원제도가 포함된 사업화 및 성과 단계 지원제도의 조세 지출 규모는 2016~2018년 평균 475억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지원의 1.9%에 불과하다.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제도 등 해당 제도들의 수는 가장 많고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높지 않아서 조세지출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연구개발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 제도로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 기업 및 근로자들이 유치되고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된 제도들이 있다. 이 제도들의 경우 연간 평균 1,231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지만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적 조세 지출 규모 감소는 「조특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2%p 인상하는 등 조세지원제도의 축소에 따른 결과이다.

3)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기업은 신성장 및 원천기술개발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활용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원제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준비단계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경과규정)	166	0.7	85	0.3	30	0.1	94	0.4
	소계	166	0.7	85	0.3	30	0.1	94	0.4
개발단계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945	86.6	22,933	87.5	22,709	88.1	22,196	87.0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9	0.0	11	0.0	10	0.0	10	0.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461	6.0	1,512	5.8	1,591	6.2	1,521	6.0
	소계	22,415	92.7	24,456	93.3	24,310	94.3	23,727	92.9

<표 2> 의 계속

(단위: 억원, %)

조세지원제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사업화 및 성과 단계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0.0	3	0.0	4	0.0	3	0.0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33	0.1	39	0.1	41	0.2	38	0.1
	(제12조의3,4)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5	0.0	12	0.0	12	0.0	10	0.0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7	0.1	16	0.1	9	0.0	17	0.1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	210	0.8	210	0.8
	(제14조) 창업자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0.15	0.0	30	0.1	31	0.1	20	0.1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34	0.6	192	0.7	205	0.8	177	0.7
	(제16조의2-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및 과세특례	-	-	-	-	-	-	-	-
	(제16조의 4)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소계	201.15	0.8	292	1.1	512	2.0	475.05	1.9
기타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133	0.6	74	0.3	41	0.2	83	0.3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임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세특례	1,262	5.2	1,297	4.9	886	3.4	1,148	4.5
	소계	1,395	5.8	1,371	5.2	927	3.6	1,231	4.8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출 합계		24,177	100.0	26,204	100.0	25,779	100.0	25,527	100.0

주: 2016년도는 실적치이며, 2017~2018년도는 전망치임
출처: 대한민국 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나. 재정지원 현황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예산사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에 따르면,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예산은 19조 4천억원이며, 568개 사업 6만 1,280개 과제에 대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011년 이후 정부예산 총액의 5.4%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축소되어 2017년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2018)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을 3.7%로 계획하고 있어서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2011~2015년 연평균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6.1%이며,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5.3%를 소폭 상회하며 연구개발 지원이 정부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부문의 우선순위는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전체 예산 증가율 4.8%를 소폭 하회했으며 2013~2017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동 기간 전체 예산 증가율 5.1%보다 1.5%p나 낮아졌다. 기획재정부(2018)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을 3.7%로 계획하고 있어서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되고 있으며 기업에 지원되는 규모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2% 내외로 2017년 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는 4조 5천억원 수준이다. 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 보조금 중 70% 수준인 3조 2천억원이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지원되고 있으며, 21% 수준인 9,504억원이 중견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일반 대기업에 지원되는 규모는 약 4,192억원으로 전체 민간기업 지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9.2%에 불과하다. 2013년 대기업 연구개발 지원 비중은 23.2%에 달했으나 이후 재무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매우 빠르게 축소할 결과이다. 한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비중은 201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표 3>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1~2015	2012~2016	2013~2017	
정부예산(A)	2,795,133	2,943,190	3,020,807	3,253,779	3,441,743	3,552,767	3,686,348	5.3	4.8	5.1	
R&D 예산(B)	148,902	160,244	168,777	177,793	188,900	190,942	194,615	6.1	4.5	3.6	
(B/A)	5.3	5.4	5.6	5.5	5.5	5.4	5.3	-	-	-	
조사 분석 대상	투자액	148,528	159,064	169,139	176,395	188,747	190,044	193,927	6.2	4.5	3.5
	사업 수	493	529	570	605	639	562	568	6.7	1.5	-0.1
과제 수	41,619	49,948	50,865	53,493	54,433	54,827	61,280	6.9	2.4	4.8	

주: 1.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 순계 기준이며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기획재정부)의 각 연도별 보고서 참조
 2. 2013년, 2016년, 2017년의 조사분석 대상 투자액은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집행 기준이나 정부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3.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행계획(안)」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았음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각 연도

<표 4> 기업 규모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원 배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기업	23.2	19.0	21.4	11.8	9.2
중견기업	17.8	14.9	14.2	18.0	20.9
대기업+중견기업	41.0	33.9	35.6	29.8	30.2
중소기업	59.0	66.1	64.4	70.2	69.8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각 연도

다.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2017년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2조 2천억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예산사업으로 4조 5천억원을 민간기업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과 조세지출을 통해 2017년 총 6조 7천억원 수준의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이 기업 규모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부지원의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집중도는 2011년 이후 최고점이 발생했던 2013년 52.6% 대비 2017년 35.1%로 17.5%p나 완화됐다.⁴⁾ 이처럼 2017년 대기업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중이 축소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인은 조세지원제도의 축소를 통해 대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2017년 세액공제 규모가 201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기업 세액공제 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2016년부터 관측되는데, 이는 신고연도 2014년 이전까지 6%이던 대기업 일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율 한도를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3%로 축소한 결과로 판단된다. 대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가 2011~2015년 연평균 13.5%씩 증가했으나 이후 2012~2016년과 2013~2017년의 기간에 각각 연평균 9.2%와 11.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기업 연구개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도 2012년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견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비중은 확대됐지만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위를 벗어난 일반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조세지원과 재정지원 모두 급격히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이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예산과 조세지출을 통해 2017년 총 6조 7천억원 수준의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는 2013년부터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에 제시된 2013년과 2014년 대기업은 과거 시계열과의 연계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을 과거와 같이 일반대기업으로 구분했다. 또한 국제통계연보는 아직까지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규모를 별도로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과거의 일반 대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5) 올해부터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증분 및 총액방식이 모두 축소되어 향후 대기업들의 세액공제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5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과 규모는 조세 및 재정 지원 모두에서 축소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유형의 정부지원 모두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연구개발지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안팎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지원과 예산사업을 통한 대기업 지원 규모가 상대적·절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전체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후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세액공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1~2015년 기간 연평균 6.3%에서 2012~2016년과 2013~2017년 동안 각각 4.2%와 4.6%로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10%를 초과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규모 증가세 둔화는 세액공제 대상인 국비지원 이외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공제감면 가능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기업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주로 지원받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주로 지원받는 양상이 2015년까지 관측되고, 이후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과 규모는 조세 및 재정 지원 모두에서 축소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유형의 정부지원 모두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접보조금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체조달한 자금을 확대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지원제도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은 자체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마저도 급속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체재원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과 금융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보다는 직접보조금 형태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지원이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는 데 더욱 적절하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제도적으로나 수혜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매우 높은 세액공제율을 허용하고 대기업에는 매우 낮은 세액공제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규모가 컸던 것은 연구개발 활동 규모가 크고 내야 할 법인세가 많기 때문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전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내외 이나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수혜 규모는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66% 수준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는 46% 수준으로 낮아졌다.

<표 5>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1~2015	2012~2016	2013~2017	
중 소 기 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9,193	9,702	9,171	9,433	9,866	10,840	11,615	6.3	4.2	4.6
	국가연구개발	18,469	20,956	21,926	24,150	27,902	28,973	31,686	14.3	11.9	10.9
	합계	27,662	30,658	31,097	33,583	37,768	39,813	43,301	11.9	9.5	9.0
대 기 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13,920	15,556	19,323	18,004	17,764	9,477	9,708	13.5	-9.2	-11.1
	국가연구개발	13,861	14,397	15,216	12,360	15,408	12,313	13,696	5.7	-2.9	-1.2
	합계	27,781	29,953	27,931	24,927	33,172	21,790	23,404	9.6	-5.9	-6.0
R&D 세액공제 대기업 집중도	60.2	61.6	67.8	65.6	64.3	46.6	45.5	-	-	-	
국가 R&D사업 대기업 집중도	42.9	40.7	41	33.9	35.6	29.8	30.2	-	-	-	
정부 R&D지원 대기업 집중도	50.1	49.4	52.6	47.5	46.8	35.4	35.1	-	-	-	
민간 연구개발비 대기업 비중	74.2	74.2	76.8	77.5	76.1	75.6	NA	-	-	-	

주: 1. 2017년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 규모는 저자의 전망치임

2. 여기서 대기업은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과거의 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각 연도

양적으로 확대된
연구개발 행위가
기업들의 시장성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소중한 정부재원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세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Ⅲ.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정부 역할의 범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 규모는 2000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주요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경제 규모 대비 연구개발 활동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양적으로 확대된 연구개발 행위가 기업들의 시장성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소중한 정부재원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세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도 조세특례제도 심층평가과제로 수행된 김학수 외(2018)는 「조특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을 제도활용 기업과 비활용 기업의 개별납세 자료와 재무제표의 주요 변수들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심층평가의 결과는 정부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양적 확대 가능성에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연구개발비의 양적 확대는 명확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비와 연구개발 설비투자의 양적 확대는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달성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의 시장성과(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법인세 차감전 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동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각 연구개발 유형별 활동이 보다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시장성과가 제고되는 경우도 대체적으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나타나며 여타 연구개발 활동에서는 제한적 효과만 있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중소기업 자료를 제외한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의 분석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김학수 외(2017)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김학수 외(2018)는 이처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확대가 기업들의 시장성으로 연계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물적 요건과 전담 인력의 인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과거 정책과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과정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한 공제 대상 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행위에 투입된 비용인지를 사전·사후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작업을 위임받은 민간협회에서 인증된 기업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서를 인정하고 있다. 간헐적인 세무조사에서 연구개발비의 적격성이 검토되기도 하지만 대기업처럼 정기적으로 일반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남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의 양적 팽창으로 포착되는 통계상의 확대는 관측되지만, 이렇게 통계상 확대된 연구개발 행위가 중소기업의 시장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과거 정부가 취해온 연구개발 행위의 양적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 지원제도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을 수행해야 마땅했다.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지나치게 단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정책기조의 문제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혁신성장의 기초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자산을 잘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시장성과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영리기업들의 경우 새로운 이윤 기회 실현을 위해 활용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

과거 정부가 취해온 연구개발 행위의 양적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경제가 보다 성장하며
순환 구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은 더욱
더 잘하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기업들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원에 익숙해져 있고 끊임없이 더 많은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예산제약에 직면해 있고 수많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세수입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책당국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세제를 강화하여 인위적으로 세수입을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경제성장을 통한 세원의 확대로 자연적 세수 증가를 도모할 것인가의 정책기조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기업과세의 기준을 효율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둔다면,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초자산을 확충하고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초한 자연적 세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당시 세입결손으로 정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기는 했으나, 2013년과 2014년 가을의 세제개편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혁신성장 기초자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인위적 세수확보 방안 중 하나로 선택했다. 대기업 세액공제율 한도 및 기본공제율 축소를 통해 정부는 대기업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두 차례나 인하했다. 2017년 세제개편에서 추가적으로 대기업 일반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낮춰서 올해부터는 총액방식의 경우 최대 2%, 증가분 방식의 경우 30%의 세액공제밖에 허용되지 않는다.⁶⁾

김학수 외(2018)의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인하는 해당 유형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⁷⁾ 기업의 시장성과 제고효과가 가장 명확한 유형의 연구개발 행위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는 동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최근 정부의 대기업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축소라는 정책기조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⁸⁾ 가장 효과성이 명확한 유형의 연구개발 행위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함으로써 확보된 연간 1조원 미만의 추가 세수확보의 대가로 향후 혁신성장의 밑거름을 훼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와 상반된 부정적 효과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가 보다 성장하며 순환 구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은 더욱 더 잘하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기업들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업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다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시장성과로 연계되지 않는 유형의 지원제도는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작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6) 중소기업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액방식의 경우 25%이고 증가분 방식의 경우 50%로 규정되어 있다. 대기업의 세액공제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전체 민간 연구개발비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6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55% 수준에 달한다.

7) 최근의 대기업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방식(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김학수 외(2018)의 p.123 <표 IV-27>을 참조하기 바란다.

8)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태적 패널 분석과 고정효과 분석을 각 기업군의 표본에 적용한 결과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김학수 외(2018)의 pp. 126~140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조세지원제도의 보편성 결여

가. 지나친 중소기업 우대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차등지원 수준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 규모별 차등적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제 비교 결과는 김학수(2016)와 김학수 외(2018)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들에서도 투자지원 등 여타 지원제도에서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우대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도별로 달리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김학수(2016)는 보고하고 있다.

김학수 외(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차등지원 정도는 일반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율에서 발생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반연구개발에 대한 총액방식 세액공제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총액방식 세액공제율은 25%이므로 대기업과의 차등지원 정도는 최소 12.5 배에 달한다. 여타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일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캐나다의 2.3배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차등지원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수 외(2018)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이렇게 우대해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행위가 중소기업의 시장성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중소기업이 보다 왕성히 성장하며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근시안적 중소기업 우대정책보다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학수(2016)는 제안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결집하는 효과가 과거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며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의도하지 않게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보다
왕성히 성장하며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 자본축적을 유도할 수 있는 법인세를 도입하고 소득재분배의 정책목표는 개인소득세를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정부안인 40% 단일세율보다 5%p 낮은 35% 단일세율 체계로 법인세제가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정치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법인세율 체계를 비롯하여 업종별 세부담 격차를 유발하는 조세지원제도, 기업 규모별 과도한 차등 과세제도 등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우대

2011년부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에 대해 높은 공제율로 우대해주고 있으나 김학수 외(2018)에 제시되어 있는 효과성 평가 결과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적 확대의 효과도 미진하고 기업의 시장성으로 연계되는 효과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최근 동 제도의 활용도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총액방식 공제율 축소라는 제도적 변화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려는 동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쏠림 현상이 또 다른 왜곡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6년과 2017년 동 제도의 신청기업 수 및 공제 대상 금액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2017년 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의 0.66%인 224개, 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3.78%인 1조 2천억원에 불과하여 조세지원제도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제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시장의 자유로운 자원배분을 높은 세액공제율로 왜곡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엇이 미래경제의 신성장동력이고 원천기술인지,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시장과 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데,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정책 대상 업종·부문·기술에 새로운 업종·부문·기술이 포함하는 데는 입법 과정이라는 긴 시간이 요구되므로 제때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한 기술 분야를 열거하고 우대세제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우대세제로부터 발생하는

2011년부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에 대해 높은 공제율로 우대해주고 있으나 김학수 외(2018)에 제시되어 있는 효과성 평가 결과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적 확대의 효과도 미진하고 기업의 시장성으로 연계되는 효과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경제적 효율성 훼손 정도를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조세제도는 보다 보편적으로 설계하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보편적 조세제도에 의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정책은 보다 정책 대상과 목적을 좁게 설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 최근 「조특법」 제10조 세액공제 신청내역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신고 연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청 기업 수	공제 대상 금액	공제세액	신청 기업 수	공제 대상 금액	공제세액	
신고 내역	전체	2015	170	455,352	95,375	26,401	28,579,727	2,475,935
		2016	190	780,338	163,546	30,607	29,204,805	2,645,614
		2017	224	1,184,908	246,914	33,614	30,131,458	2,711,270
	중소기업	2015	119	43,047	12,914	24,488	5,931,972	1,482,993
		2016	134	74,782	22,434	28,706	6,645,549	1,684,546
		2017	155	99,329	29,799	31,698	7,095,464	1,799,289
	중견기업	2015	19	87,504	17,501	1,067	1,931,846	170,078
		2016	17	28,483	5,697	1,014	1,944,688	187,050
		2017	25	40,809	8,162	1,095	2,156,610	203,489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2015	20	236,673	29,961	327	18,895,385	738,332
		2016	26	474,738	94,948	311	18,455,061	660,851
		2017	28	856,274	171,255	225	17,426,539	557,580
	그외 기업	2015	12	88,127	34,999	519	1,820,524	84,531
		2016	13	202,335	40,467	576	2,159,506	113,167
		2017	16	188,496	37,699	596	3,452,845	150,912
전년도 대비 증가율	전체	2016	11.76	71.37	71.48	15.93	2.19	6.85
		2017	17.89	51.85	50.98	9.82	3.17	2.48
	중소기업	2016	12.61	73.72	73.72	17.22	12.03	13.59
		2017	15.67	32.83	32.83	10.42	6.77	6.81
	중견기업	2016	-10.53	-67.45	-67.45	-4.97	0.66	9.98
		2017	47.06	43.27	43.27	7.99	10.90	8.79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2016	30.00	100.59	216.90	-4.89	-2.33	-10.49
		2017	7.69	80.37	80.37	-27.65	-5.57	-15.63
	그외 기업	2016	8.33	129.60	15.62	10.98	18.62	33.88
		2017	23.08	-6.84	-6.84	3.47	59.89	33.35

출처: 김학수 외, 2018, p.42, <표 II-6>

<표 7>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 비중

(단위: %)

구분	신고 연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 비중		
		신청 기업 수	공제 대상 금액	공제 세액
전체	2015	0.64	1.57	3.71
	2016	0.62	2.60	5.82
	2017	0.66	3.78	8.35
중소기업	2015	0.48	0.72	0.86
	2016	0.46	1.11	1.31
	2017	0.49	1.38	1.63
중견기업	2015	1.75	4.33	9.33
	2016	1.65	1.44	2.96
	2017	2.23	1.86	3.86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소속	2015	5.76	1.24	3.90
	2016	7.72	2.51	12.56
	2017	11.07	4.68	23.50
그외 기업	2015	2.26	4.62	29.28
	2016	2.21	8.57	26.34
	2017	2.61	5.18	19.99

출처: 김학수 외, 2018, p.42, <표 II-7>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조세지원제도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수혜자의 개별 기업 자료를 통합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특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연구개발비의 대상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과 이외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는 제외된다. 따라서 직접보조금의 형태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 사이의 유사·중복성은 일차적으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정지출 사업의 수혜자와 조세지원제도 수혜자의 개별 기업 자료를 통합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들의 시장성과를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연구개발 활동이 시장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들어, 두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비가 조세지원 또는 재정 지원만 받은 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이 각각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향후 정책방향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연구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IV. 개선방안

1. 연구개발비 적격성 검증 강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들의 시장성과를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연구개발 활동이 시장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비와 모든 기업군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의 적격성을 확인 및 점검하는 과세관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에 정부지원 혜택이 귀착되도록 만들 수 있다.

김학수 외(2017)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단기적 보완책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스스로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된 적격 비용만을 신청했는지를 자가 점검하는 과정을 신설하고 무작위 세무조사를 통해 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적격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및 회계장부의 구비 및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법률로써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작업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양적으로 확대되는 연구개발 행위가 기업들의 시장성과로 연계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책 대상자 선정방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학수 외(2017)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 대상자를 전담 연구조직의 인적 및 물적 요건의 충

족 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 의해 결정하고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적절한 검증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정책 대상자 선정방식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행위로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외형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현행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증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기업과세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 필요

인위적 과세 강화를 통한 세수 확대보다는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세원과 세수 증가가 지속가능한 재정확충 방안이라는 점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이 기업과세의 기준을 효율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고 세부적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잘하는 기업은 더 잘하고 못하는 기업은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정책기조하에서 현행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기초 자산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양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당 기업군의 시장성과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13년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3. 조세지원제도의 보편성 강화

조세지원제도의 보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등과세의 폭을 현격히 축소해야 한다. 이는 정치 과정에서 달성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세법 고유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보다 훨씬 작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의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김학수(2018)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외부감사 대상 1만 8,186개 중소기업들이 2016년 말 현재 총 112조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력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범위 기준보다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혁신 성향이 높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신생기업들이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양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당
기업군의 시장성과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13년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 연구개발
조세·재정 지원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세부 정보와
조세지원을 받은
국세청 자료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업종별 및 기업 규모별 차등지원 수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조세지원 혜택을 다소 확대하는 한편, 특정 자산, 특정 업종, 특정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조세특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양적 확대와 기업들의 시장성과 제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으므로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0여개 기업들을 위해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재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현행과 같이 별도의 제도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신청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의 적격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 체계도 제헌국회의 입법정신을 되살려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4단계 세율체계는 여타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세율체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높은 법인세율은 연구개발 투자의 사용자 비용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성장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법인세율 체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개발 관련 조세·재정 지원 통합 DB 구축

민간기업 연구개발 조세·재정 지원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세부 정보와 조세지원을 받은 국세청 자료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다른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부처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자료들의 통합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시점이 머지않아 도래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범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김학수,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14-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_____,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6-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_____,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10권 제3호, 2017.
- _____,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재정포럼』, 제26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 『R&D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7-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김학수·박기백·손원익·전영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 심층평가(IX),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대한민국 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15· 2017.
- IMF, IMF Fiscal Monitor: Achieving More with Less, 2017.
- OECD,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indicator), 2018a. doi: 10.1787/d8b068b4-en (Accessed on 22 September 2018).
- _____, Researchers (indicator). 2018b. doi: 10.1787/20ddfb0f-en (Accessed on 22 September 2018).
- _____,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8c.
- _____, “OECD Time-Series Estimates of Government Tax Relief for Business R&D,” TAX4INNO Proect 674888, 2018d.

공공정책포럼



■ 제54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

개요

- **주 제**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
- **일 시** 2018년 11월 29일(목), 07:30 ~ 09:30
- **장 소**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1F)
- **진행순서**
 - 07:30 ~ 08:00 **조찬**
송대희 좌장
 - 08:00 ~ 09:00 **주제 발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
 - 09:10 ~ 09:30 **자유 토론**
 - 09:30 **폐회**

본 원고는 2018년 11월 29일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1F)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54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회 / 좌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을 주제로 한 제54회 공공정책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님은 오래전부터 남북관계에 관한 전문가로 꾸준히 활동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든 현안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종석 전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 요약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진행될수록 실제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현재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경협의 전망을 이해하면서 공공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I. 한반도 정세 변화의 특징과 현안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국면이 과거와 같이 다시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긴장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한편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 평화 정세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대결 구도가 동시에 해소되는 구조적인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북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적대적인 관계에서 평화 변영의 길로 변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이루어낸 이후, 평화 조성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위기 원인의 제공자였던 북한의 지도자가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결단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완화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간 평화 국면의 진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체제 안전 보장뿐 아니라 경제 부국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가난한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가 되고자 하는 큰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불신과 갈등으로 조성된 북한과의 관계를 신뢰와 협상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은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국익을 어떻게 얻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큰 결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미 간의 비핵화가 타결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중재역량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II. 남북경협을의 전제와 고려사항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완화되었으며, 전반적인 경제 수준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개혁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 북한이 비교우위를 가진 기술이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2010년부터 대외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북-중 공동개발과 공동관리 경제특구 합의를 추진했으며, 2013년에는 경제개방을 공식화하는 등 개방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습니다. 북한의 경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은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시장친화적인 태도와 최신 기술 및 경영방법들을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학기술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건설하고, 과학자를 대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교우위를 가진 기술과 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수한 산업노동력과 경공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경공업 기술

에 우리나라 기업이 가진 자본력과 기술력을 더한다면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북한은 석탄을 포함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철산업에 필요한 수입 지하자원을 북한의 보유자원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물류비를 상당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발전은 전통적인 단계적 발전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산을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일반산업을 융합하는 식의 복합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 예상합니다.

과거 경제 발전 이전의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산업뿐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30년간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중국의 모델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모델을 따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계획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진행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시혜적인 대북 투자 인식을 지양하고, 남북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III. 평화변영 이후 한반도의 미래

21세기 남북경협은 한민족의 삶의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면이 해양으로만 연결된 우리나라에서 1면 대륙으로 연결되는 한반도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억 1천만명의 동북3성과 2,500만명의 북한, 5천만명의 우리나라가 합쳐져 북방경제의 활성화를 이

루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평화 이후 도래할 새로운 미래에 대해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공공기관도 동참하여 준비하기를 기대합니다.

■ 질의 응답

김종호 / 도로교통공단 경영본부장

Q: 남북관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통일, 협력, 평화 등의 다양한 용어에 대해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A: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로 향해 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통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일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절대적인 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남북이 협력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남북협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Q: 경제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북한은 SOC 건설 등을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자본 몰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즉 북한의 국가적 리스크를 먼저 줄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보장 방식 등의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외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신용에 관한 문제를 북한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노력 또한 미숙하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역을 만들어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마무리 말씀

송대희 / 좌장

오래된 숙제인 남북관계에 있어 지금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보다 더 큰 시장이 형성되고 경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륙으로 뻗어가는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이 달성되기를 희망하면서 올해의 마지막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독일 - 2018년 세법개정안 의회 통과]

■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2018년 11월 23일 2018년 세법개정안¹⁾을 승인함²⁾

- 독일 재무부는 2018년 6월 26일 과거 유럽사업재판소(ECJ)와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국세법에 반영하고, 온라인 거래로 발생하는 VAT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개정안 초안은 2018년 11월 8일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승인된 이후 이번 연방상원에서 최종 승인된 것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 1)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 2) 지분을 과다 변동 시 결손금 이월공제 제한 규정 완화, 3) 바우처 제공금액의 VAT 과세 시 EU지침에 따라 바우처 정의 규정, 4)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VAT 대리납부가 있음³⁾

■ 독일 비거주자가 독일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에 과세하도록 비거주자의 자본이득 과세 범위를 확대함⁴⁾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독일에 설립장소 또는 영업장소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과거 5년간 1%라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자본이득에 과세함
- 이번 개정안에서는 독일에 설립장소 또는 영업장소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독일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과거 5년간 1%라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자본이득에 과세하도록 과세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과거 1년간 법인의 총자산 중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독일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보유한 법인을 말함
-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 시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3조 4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2018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1) Gesetz zur Vermeidung von Umsatzsteuerausfällen beim Handel mit Waren im Internet und zur Änderung weiterer steuerlicher Vorschriften (draft bill to avoid VAT losses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goods via online trading and to amend further tax provisions)

2) Germany - Federal Council adopts draft bill to avoid VAT losses in connection with supply of goods via online trading and to amend further tax provisions (26 Nov. 2018), News IBFD.

3) 개정안 세부내용은 EY, "German Federal Parliament adopts Annual Tax Act 2018"를 참조하여 작성함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german-federal-parliament-adopts-annual-tax-act-2018>, 접속일자: 2018. 11. 27.

4) PWC, <https://www.pwc.com/us/en/tax-services/publications/insights/assets/pwc-germany-to-extend-non-resident-capital-gains-taxation.pdf>, 검색일자: 2018. 11. 27.

■ 과거 5년간 지분율이 25~50% 범위 내에서 변동한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50% 이상 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 목적의 변동인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함

- 독일은 지난 2008년 세제개편 시 과거 5년 동안 25~50% 범위 내에서 지분율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50% 이상의 지분율 변동 시 결손금 전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이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결손금을 인수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이번 개정은 지분율 변동에 따라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를 제한하는 2008년 세법개정 사항이 응능과세원칙(ability-to-pay principle)⁵⁾ 및 과세 일관성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임⁶⁾
- 따라서 이번 개정사항은 소급 적용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함

<표 1> 독일의 지분율 과다변동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개정사항

구분	현행 ¹⁾	개정
최근 5년 이내 지분율 변동률 25% 이상~50% 미만	결손금 중 지분율만큼 이월공제 허용 안 함	결손금 전액 이월공제 허용
최근 5년 이내 지분율 변동률 50% 이상	결손금 전액 이월공제 허용 안 함	좌동 (예외: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지분율 변동 시 이월공제 허용)

주: 1) 2008년 개정된 사항임
출처: EY, "German Federal Parliament adopts Annual Tax Act 2018"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EU지침에 따라 단일목적 상품권(single-purpose voucher)과 다목적 상품권(multi-purpose voucher)의 정의 및 각 상품권의 과세시기를 규정함

- EU지침에 따르면 단일목적 상품권은 발행 당시 사용처가 명확한 상품권을 말하며, 다목적 상품권은 단일목적 상품권을 제외한 것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단일목적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당시에 VAT를 과세하며, 다목적 상품권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에 VAT를 과세함
- EU는 2017년 6월 27일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의 VAT 과세 관련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⁷⁾ 독일은 EU지침에 따라 내국세법을 개정하는 것임

5) 과세표준을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6) Germany -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inds change-in-ownership rules unconstitutional(15 May 2017), News IBFD.

7)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6.177.01.0009.01.ENG&toc=OJ.L:2016:177:TOC, 검색일자: 2018. 11. 27.



■ 온라인을 통해 독일 거주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독일 과세당국에 VAT를 납부하지 않는 해외 판매업자를 대신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VAT를 납부하도록 개정함⁸⁾

-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의 정보, 물품 인도 및 도착장소, VAT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VAT 납부증명서 등의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VAT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 않게 됨
- 이번 최종 승인된 개정안에서는 초안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10년간 자료보관 의무 규정을 추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벨기에 -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의 시범사업 시행]

■ 벨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Co-operative Tax Compliance Program)’의 시범사업을 이행할 계획임⁹⁾

- 최근 많은 국가들도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협력을 통해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OECD의 조세행정포럼에서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납세순응 제도의 설계를 제안한 바 있음

■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은 과거와 달리 납세자와 국세청 간 신뢰, 투명성,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임¹⁰⁾

■ 주요 내용으로 1) 국세청 내 기업전담 담당자 제공, 2) 세무조사 간소화 및 기간 단축, 3) 기업에 유용한 과세사례 정보 공유가 있음

- 국세청 내 기업전담 담당자를 제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조세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사전 논의를 진행함
 - 국세청 내 대기업 담당부서에 있는 자 중 1명의 코디네이터와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담당자는 5년 주기로 변경함
- 세무조사는 과거 거래에 대한 조사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 신고서 작성까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시킴
- 납세자에게 과세 확실성을 주기 위해 기업에 유용한 과세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프로그램 참여 시 기업은 과세관청과 분쟁 및 과세위험(tax risk)을 줄일 수 있고, 국세청 내 기업담당자 배정으로 과세관청과 소통 원활화 및 과세 확실성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음

8) 자세한 개정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07호」 참조

9) Belgium - Co-operative Tax Compliance Programme initiated(31 Oct. 2018), News IBFD.

10) 벨기에 재무부, <https://financien.belgium.be/nl/ondernemingen/grote-ondernemingen/co-operative-tax-compliance-programme>, 검색일자: 2018. 11. 26.

- 시범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소수의 대기업만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적용 대상 대기업은 총매출액, 총자산금액, 종업원 수, 세금납부액, 계열사 수와 같은 정량적 요소와 과거 3년간 기한 내 세액납부 여부, 각종 채무 불이행 또는 법규위반 여부와 같은 정성적 요소도 고려하여 결정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폴란드 - 의무보고규정 도입안 상원 통과]

- 폴란드 상원은 2018년 10월 26일 EU지침에 따른 의무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 도입안을 최종 승인함¹¹⁾
 - 의무보고규정은 OECD의 BEPS Action 12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공격적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 위험이 있는 국제거래에 대해 납세자 또는 납세대리인이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임
 - EU에서도 2018년 6월 5일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제보고의무 지침(EU Directive 2018/822)을 승인한 바 있으며, EU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강제보고 관련 EU지침을 이행해야 함¹²⁾

- 폴란드의 의무보고 규정은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였고, 부가가치세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여 EU지침보다 보고 대상 범위를 넓게 규정함
 - EU지침에 따른 보고 대상 거래는 잠재적으로 조세회피 위험이 있는 거래로 다음과 같은 특징(hallmark)을 갖는 거래를 말함¹³⁾
 - 소득을 이전하는 곳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나, 소득을 수취하는 곳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거래
 -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거래
 -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매우 약한 국가로 소득이 이전되는 거래
 - 조세예규(tax ruling) 교환을 회피할 수 있는 거래
 - 중개인의 자문수수료가 절세금액과 연계되는 거래
 - 같은 자산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감가상각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래
 - 같은 소득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
 - EU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전가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래

11)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5-november-2018>. 검색일자: 2018. 11. 27.

12)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eu-publishes-directive-on-new-mandatory-transparency-rules-for-intermediaries-and-taxpayers>, 검색일자: 2018. 11. 27.

13) EU Directive 2018/82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L0822>, 검색일자: 2018. 7. 22.



- 폴란드의 의무보고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고 대상 거래의 보고기한은 다음과 같음
 - 보고기한은 고객이 해당 조세전략을 알게 되거나, 조세전략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거나, 조세전략을 실행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멕시코 - 디지털세 도입안 발표]

- 멕시코 의회는 2018년 11월 현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남¹⁴⁾
- 디지털세는 기존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세목으로 디지털 콘텐츠 이용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는 추가 부가가치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¹⁵⁾
 -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이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과세 대상 활동이라는 정의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없으며, 디지털세 과세 근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함

- 과세 대상자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멕시코 거주자 및 멕시코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임
 - 디지털세 과세 대상 서비스는 디지털 광고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용자 데이터 전송 서비스임
- 디지털세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3%의 세율로 과세함¹⁶⁾
 - 디지털세는 1억멕시코페소(약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과세함

- 디지털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인지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조정문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발견하지 못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영국 - 2018 예산안 발표]

- 영국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2018 예산안(Budget 2018)을 2018년 10월 29일자로 의회에 제출함¹⁷⁾
 - 세부내용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안에 반영될 것이며, 2018/19년도 관련 일부 개정사항은 2018년 11월 7일에 발표된 재정법안(Finance Bill No.3)에도 포함됨

14) Mexico - Proposal for taxation of digital economy under discussion (08 Nov. 2018), News IBFD.
 15)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6384a5f-b664-4886-b9d0-bc06ae05b9b0>, 검색일자: 2018. 11. 27.
 16) 상동
 17)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0-30_uk_3.html&WT.z_nav=Pagination, 검색일자: 2018. 11. 23.
 KPMG, <https://home.kpmg.com/uk/en/home/insights/2018/10/autumn-budget-2018-on-a-page.html>, 검색일자: 2018. 11. 23.

- 소득공제 관련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개정사항,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법인세

■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사업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함

- 지난 2015년 세법개정 시 영업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영업권 처분 이전에 상각(amortization) 등을 통해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
- 이러한 영업권 상각 제한은 유형자산 이외 무형의 가치가 높은 지식산업과 관련하여 영국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됨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사업양수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세법상 상각 및 비용 공제를 허용함
 - 상각 대상 금액은 해당 영업권의 취득원가 및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정가치(fair value)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함
-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을 의미함
 - 특허권, 상표권, 등록 디자인, 저작권, 라이선스 및 기타 산업·상업·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기술 등을 포함함
 - 관계사로부터 취득한 것 등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은 허용되지 않음

- 상각률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거나 연간 4%의 고정상각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영업권 취득에 대해 적용될 예정임

■ 이월된 투자손실로부터 공제 가능한 한도를 투자이익의 50%로 제한함

- 2020년 4월 1일 이후로는 과거 투자손실(capital loss) 발생분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투자이익(capital gain)의 50% 이내로 제한됨
- 다만 동 제한 규정은 매년 500만파운드 이내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영국 국세청은 일부 대규모 기업 이외 대부분의 일반기업들은 해당 제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함

■ 특정 분야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함

- 시설 및 기계장치류에 허용되는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규모를 기존 20만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로 인상함
 - 2019 및 2020 과세연도에 대한 한시적인 조치임
- 비주거용 건물 및 구축물을 위한 신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매년 2%의 비율로 50년 동안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를 도입함
 - 2018년 10월 29일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 건부터 적용됨



2. 개인소득세

■ 기업가 세액경감(Entrepreneurs' Relief) 관련 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함

- 현행 영국 세법상 개인 기업가가 보유한 소정의 사업체 전부 또는 일부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10%의 경감세율로 과세함
 - 당해 사업 또는 주식 처분 직전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 주식 및 의결권의 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단기 투자 및 자본회수에 대한 혜택을 지양하고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가에 대한 혜택 부여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함
- 개정안에서는 처분 직전 보유기간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
- 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주식 지분율 요건 이외에 해당 기업의 가치분소득 및 순자산 각각에 대해 5%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함

■ 개인소득세 기본소득공제 금액 및 기본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 구간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 소비자물가 상승 정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에서 차감되는 기본소득공제액을 현행 1만 1,850파운드에서 2023년 1만 3,310파운드로 인상하고, 기본세율(20%) 적용 대상 과세표준 상한¹⁸⁾을 현행 3만 4,500파운드에서 4만 100파운드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표 2> 소득공제 금액 한도 및 기본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 상한

(단위: 파운드)

연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소득공제 한도	11,850	12,500	12,500	12,760	13,030	13,310
기본세율 대상	34,500	37,500	37,500	38,300	39,200	40,100

출처: HMRC, Income Tax: Personal Allowance and basic rate limit from 2019-20, October 29, 2018.

3. 디지털서비스세

■ 디지털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함

- 고도화된 디지털경제하에서 현행 국제조세체계상 디지털서비스 이용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효과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일부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를 우선 시행하는 잠정적 과세방안(interim action)을 제안함

■ 특정 디지털 거래에서의 매출액에 대해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특정 디지털 용역 거래 및 납세자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온라인 판매나 디지털서비스 전반에 걸친 일반적 과세 조치는 아님
- 매출액의 주요 부분이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분야에 한정됨

18) 현행 영국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금액 중 3만 4,500파운드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40% 또는 최대 45%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 과세 시행시기는 2020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됨
- 디지털서비스세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액의 주요 원천이 사용자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한정됨
 -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플랫폼 제공: 사용자 기반을 확충하고 이들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검색엔진(search engine) 제공: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플랫폼 기능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한 광고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
 - 온라인 상거래플랫폼(online marketplace) 제공: 광범위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 및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제공
- 디지털서비스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영국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일부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을 위하여 이익률을 감안하여 과세하는 대안도 도입할 예정임
 - 과세 대상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이 5억유로 이상이고 영국 내 사용자와 관련된 해당 서비스 매출액이 연간 2,5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과세됨

- 이익률이 매우 낮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과세 시 납세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런 기업들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도입할 예정임
- 디지털서비스세는 현행 법인세 산출 목적상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공제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스페인 - 조세회피 대응 법안 발표]

- 스페인 정부는 조세탈루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measur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을 2018년 10월 23일자로 발표함¹⁹⁾
 -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과세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출국세(exit tax) 일부 수정사항 등 조세회피 방지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제시함
 - EU의 조세회피 방지 조치(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의 취지를 반영함
- 지주회사에 적용하던 CFC 규정 적용 제외 혜택 (safe harbor)을 폐지함

19)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1-05_es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 2018. 11. 26.
E&Y, <https://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spanish-council-of-ministers-releases-draft-anti-tax-evasion-bill-for-public.aspx>, 검색일자: 2018. 11. 26.



- 현행 법령상 자회사 지분의 5% 이상을 1년 넘게 보유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동 지주회사가 단순히 자산만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 해당 자회사 지분 투자를 관리할 인적 및 물적 자원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함
- 개정안에서 위 예외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CFC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단, EU지역 소재 지주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입증된다면 CFC 예외조항의 적용이 여전히 가능함
- CFC 규정의 적용 대상 기업 및 소득의 범위가 확대됨
 -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도 CFC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 CFC 규정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수동적 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신규로 추가함
 - 당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가치 창출을 하지 않는 매출 및 서비스 소득
 - 보험, 리스 및 금융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실질적인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경우
- 출국세(exit tax)의 납부 유예기간을 줄이고 즉시 납부해야 할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출국세 과세를 강화함
 - 현행 세법상 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국가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출국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최대 5년 이내에 연도별 분할 납부하도록 함
 - 납세자의 신상 변동이나 의무 위반 등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분할 납부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출국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해당 자산이 제3국으로 이전될 경우
 - 납세자가 파산 또는 청산에 이르게 된 경우
 - 납세자가 분할 납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과세 투명성, 경제적 실질, 저율 과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조세피난처 개념 범위를 확대함
 - OECD BEPS Action Plan 5 등을 참고하여 조세피난처의 개념 정의와 범위를 확대함
 -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 영토 또는 과세체제(tax regimes)를 조세피난처의 범위에 추가함
 - 관련 세법의 규정이나 실제 집행 수준에 비춰볼 때 과세 투명성이 낮고 불명확성이 높은 경우
 - 실질적인 경제활동 없이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또는 투자기구를 설립·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경우

■ 내국 및 외국 ETF 간 과세형평 제고, 가상통화 관련 정보 제공의무 강화, 수입거래에 대한 VAT 납세의무 강화 등의 기타 개정사항을 포함함

- 스페인 이외의 EU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펀드 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국내 ETF 펀드와의 과세 일관성을 유지함
- 납세자들이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해 신고하는 서식에 가상통화 보유금액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함
-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통관대리인 이외에도 수입자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자를 VAT의 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VAT의 부차적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중국 - 환경보호세 과세 대상 오염물질 적용 등에 관한 통지 발표²⁰⁾

■ 중국 국세청은 「환경보호세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세 과세 대상 오염물질 적용 등에 관한 통지’를 10월 25일 발표함

- 중국의 환경보호세는 기존에 시행하던 환경보호비를 환경보호세로 전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환경보호세는 오염물질 종류를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산업 소음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음²¹⁾

- 과세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생산경영자가 납세의무자임
- 과세 기준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임
- 오염물질의 당량(當量)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함²²⁾

<표 3> 중국의 환경보호세율

구분	세금 단위	세율	
대기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량	1.2위안	
수질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량	1.4위안	
고체 폐기물	석탄 맥석(煤矸石)	5위안/톤	
	미광(尾矿)	15위안/톤	
	위험폐기물	1,000위안/톤	
산업 소음	기준 초과 분량	1~3dB	월 350위안
		4~6dB	월 700위안
		7~9dB	월 1,400위안
		10~12dB	월 2,800위안
		13~15dB	월 5,600위안
	16dB	월 11,200위안	

■ 현행 대기 오염물질의 과세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여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기로 함²³⁾

- 석면 분진, 유리섬 분진, 카본블랙 분진으로 확정된 것은 제외하고, 비산 먼지, 공업분진 등은 일반 분진으로 간주하여 환경보호세를 부과함

20)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50019/content.html>, 검색일자: 2018. 11. 12.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7-10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중국-환경보호세-도입-예정/525141, 검색일자: 2018. 11. 21.

22) 「환경보호세법」 제24조: 오염당량은 오염물질의 환경유해성 등에 근거하여 각 오염물질의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종합지표 또는 계량 단위를 의미함

23)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50019/content.html>, 검색일자: 2018. 11. 12.



<표 4> 대기 오염물질의 오염당량치

(단위: kg)

오염물질	오염당량치	오염물질	오염당량치
1. 이산화유황	0.95	23. 자일렌	0.27
2. 질소산화물	0.95	24. 벤조아필렌	0.000002
3. 일산화탄소	16.7	25. 포름알데히드	0.09
4. 염소가스	0.34	26. 아세트알데히드	0.45
5. 염화수소	10.75	27. 아크릴알데히드	0.06
6. 불화물	0.87	28. 메탄올	0.67
7. 시안화수소	0.005	29. 페놀류	0.35
8. 황산 미스트	0.6	30. 아스팔트 증기	0.19
9. 크롬산 미스트	0.0007	31. 아닐린류	0.21
10. 수은 및 수은 화합물	0.0001	32. 클로로벤젠류	0.72
11. 일반 분진	4	33. 니트로벤젠	0.17
12. 석면 분진	0.53	34. 아크릴로니트릴	0.22
13. 유리섬 분진	2.13	35. 클로로에틸렌	0.55
14. 카본블랙 분진	0.59	36. 포스겐	0.04
15. 납 및 납 화합물	0.02	37. 황화수소	0.29
16.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0.03	38. 암모니아	9.09
17. 베릴륨 및 베릴륨 화합물	0.0004	39. 트라이메틸아민	0.32
18. 니켈 및 니켈 화합물	0.13	40. 메틸메르캅탄	0.04
19. 주석 및 주석 화합물	0.27	41. 디메틸설파이드	0.28
20. 검댕	2.18	42. 디메틸디설파이드	0.28
21. 벤젠	0.05	43. 스티렌	25
22. 톨루엔	0.18	44. 이황화탄소	20

출처: 중국 전인대, http://www.npc.gov.cn/npc/flcazqyj/2016-09/02/content_1996531.htm, 검색일자: 2018. 11. 16.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중국 - 개인소득세 특별공제항목 신설 발표²⁴⁾

■ 중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개인소득세 특별소득공제항목 개정안’을 10월 20일 발표함

- 2019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자녀교육비공제, 본인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중병 치료비), 생애 첫 주택 대출이자공제, 주택임대료공제, 노인부양지출비공제임
- 현재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거공적지원금 특별소득공제 항목만 시행되고 있음

■ 자녀교육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자녀 1인당 유아교육에서 대학원까지 교육비 지출에 대해 연간 1만 2천위안(약 194만원)²⁵⁾을 공제할 수 있음

-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교육비가 해당됨

■ 본인교육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학위 과정 교육비 지출에 대해 연간 4,800위안(약 78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 기능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지출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 과세연도에 3,600위안(약 5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의료비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개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중 1만 5천위안(약 24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연간 6만위안(약 9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사회의료보험 시스템에 기록된 1만 5천위안을 초과하는 개인 부담 치료비 중 중병 치료를 위한 지출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음

■ 생애 첫 주택 대출이자공제는 납세의무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적립금을 이용하여 첫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 대출상환 기간 동안 매년 1만 2천위안(약 194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 무주택 납세의무자는 임대주택 소재지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어 주택임대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직할시, 성회(省會)도시 등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공제한도는 연간 1만 4,400위안(약 233만원)임
- 직할시와 성회도시 등을 제외한 시 관할구역의 인구가 100만을 초과하는 기타 도시의 주택임대료 공제한도는 연간 1만 2천위안(약 194만원)임
- 인구가 100만 미만 도시의 주택임대료 공제한도는 연간 9,600위안(약 155만원)임

■ 납세의무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등 법정 부양가족의 부양비용을 노인부양 지출비 공제항목으로

24) 국세청, <http://hd.chinatax.gov.cn/hudong/noticedetail.do?noticeid=1701566>, 검색일자: 2018. 11. 15.

25) 1위안=162원(2018. 11. 26. KEB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가 외동일 경우 연간 2만 4천위안(약 389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함
 - 납세의무자가 외동이 아닐 경우 형제자매와 2만 4천위안을 분할하여 각각 공제 가능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뉴질랜드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

■ 뉴질랜드 국세청은 10월 25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s) 개정안을 발표함²⁶⁾

- 세액공제액: 적격연구개발비(eligible expenditure)의 15%(기존은 12.5%)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자격 최소 지출액은 (minimum threshold) 5만뉴질랜드달러이며, 최대 1억 2천만뉴질랜드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²⁷⁾
 -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적격연구개발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향상된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창출하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활동 등

에 지출된 금액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 임금, 자산, 소모품 비용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함

- 기업 적격성 심사: 내국법인(상장기업은 제외)
 -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5만 5천뉴질랜드달러까지 환급 가능
 - 당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적격연구개발비는 환급 가능하지만 연구개발 인력비가 최소 총 임금지출액의 20%는 충족해야 함
 - 시행일: 2019/20 회계연도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OECD -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조약 위한 통합 조약문 발표]

■ OECD는 2018년 11월 14일 다자협약²⁸⁾이 적용된 조세조약들(covered tax agreements)을 위한 ‘통합 조약문(synthesised texts)’ 지침을 발표함²⁹⁾

-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은 47개(15개 국가)임
- 통합 조약문은 다자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적 해석을 위해 다자협약의 조약은 기존 조세조약과 함께 해석되어야 함

26) 뉴질랜드 국세청, <http://taxpolicy.ird.govt.nz/news/2018-10-25-rd-tax-bill-introduced>, 검색일자: 2018. 11. 16.

27) 1뉴질랜드달러=767원(2018. 11. 26. KEB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28)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잠식 예방을 위한 조세조약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는 다자협약, 정식 영문 명칭은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며 줄인 명칭으로 다자협약, 또는 'MLI'를 사용함

29)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guidance-synthesised-texts-for-providing-clarity-on-the-impact-of-the-multilateral-instrument.htm>, 검색일자: 2018. 11. 16.

- 다자협약상 다자협약 당사자 간에 통합 조약문을 개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이 지침에서는 통합 조약문 개발을 위해 사용한 접근법을 포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박스 형태의 예시 조약문안을 제시함
- 조세조약서문 앞에 추가하는 통합조약서에 대한 일반면책조항(disclaimer)
- 조세조약서문 앞에 추가하는 다자협약의 실제 적용 시의 일반면책조항
- 다자협약의 조문별로 조세조약의 수정을 요하는 다자협약 조항의 예시문안
- 다자협약의 조문별로 다자협약 실제 적용 시의 예시주석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 다자협약으로 인해 수정된 2014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조약서를 예시로 제시하여 다자협약이 (기존) 조세조약 조약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 다자협약 조항이 기존 조세조약을 ‘교체(replace)’ 혹은 ‘수정(modifies)’한다면 통합 조약서상에 이전 조항에 대한 다자협약의 효과를 기술해야 하며 기존 조세조약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세부내용을 제공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OECD -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 결과 발표]

- OECD는 2018년 11월 13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53개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함³⁰⁾
- 53개의 조세특례제도 중 18개는 유해 요소를 폐지 또는 개정하였으며, 4개는 Action 5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제도가 구체적으로 고안 중이고, 10개는 개정 또는 폐지의 시정조치를 약속했음

<표 5>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 결과

No	국가	조세제도	검토 결과
1	안도라	특정무형자산 개발을 위한 특별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2	안도라	지주회사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3	안도라	국제무역 참여 회사	폐지됨
4	안도라	관계회사 간 자금거래 제도	폐지됨
5	아루바	면제 회사(IP 또는 non-IP)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6	아루바	자유구역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7	아루바	선박 또는 항공	유해하지 않음

30)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latest-results-on-preferential-regimes-and-moves-to-strengthen-the-level-playing-field-with-zero-tax-jurisdictions.htm>, 검색일자: 2018. 11. 20.



<표 5>의 계속

No	국가	조세제도	검토 결과
8	아루바	산 니콜라스 제도	폐지됨
9	아루바	IPC	검토 중임
10	아루바	투자 유치	검토 중임
11	호주	역외 बैं킹 부서	개정이 진행 중임
12	브루나이	서비스 개척 회사(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13	퀴라소	혁신 박스	검토 중임
14	퀴라소	수출 시설(IP 또는 non-IP)	폐지됨
15	퀴라소	E-구역	개정됨(해당 범위 아님)
16	가봉	특별 경제구역	검토 중임
17	그리스	세금 특허권 장려제도	검토 중임
18	홍콩	기업 재무센터에 대한 이익세금 감면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19	홍콩	전문 재보험회사에 대한 이익세금 감면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20	홍콩	전속 보험회사에 대한 이익세금 감면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21	요르단	아카바 특별 경제구역(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22	카자흐스탄	AIFC	검토 중임
23	카자흐스탄	특별경제구역(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24	케냐	특별경제구역(IP 또는 non-IP)	운영되지 않음
25	리투아니아	IP 제도	유해하지 않음
26	말레이시아	국제통화 비즈니스 유닛	검토 중임
27	몰디브	몰디브 외 원천이익에 대한 감면세금을 적용	삭제 진행 중임
28	모리셔스	자유무역항(freeport) 구역	개정됨(해당 범위 아님)
29	모리셔스	전속 보험회사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30	모리셔스	글로벌비즈니스라이선스1(IP 또는 non-IP)	폐지됨
31	모리셔스	글로벌비즈니스라이선스2(IP 또는 non-IP)	폐지됨
32	모리셔스	부분면제제도	유해하지 않음
33	모리셔스	2004 은행법에 따른 자격보유은행(B부분)	폐지됨
34	모리셔스	2004 은행법에 따른 자격보유은행	유해하지 않음
35	몽골	자유무역구역(IP 또는 non-IP)	삭제 진행 중임
36	몬트세랫	국제비즈니스 회사	삭제 진행 중임
37	파나마	일반 IP제도	검토 중임
38	파라과이	해외자본투자(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표 5> 의 계속

No	국가	조세제도	검토 결과
39	파라과이	자유구역	해당 범위 아님
40	파라과이	투자보증	검토 중임
41	필리핀	지역 운영 본사들	삭제 진행 중임
42	세인트키츠네비스	네비스 LLC	검토 중임
43	세인트키츠네비스	네비스 비즈니스 회사	검토 중임
44	세인트키츠네비스	회사법	검토 중임
45	세인트키츠네비스	재정장려제도법	해당 범위 아님
46	세인트루시아	국제비즈니스 회사(IP 또는 non-IP)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47	세인트루시아	국제 신탁(IP 또는 non-IP)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48	세인트루시아	국제 파트너십(IP 또는 non-IP)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49	산마리노	IP 제도	유해하지 않음
50	산마리노	신규회사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51	산마리노	첨단기술 신생회사에 대한 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52	스페인	특정무형자산소득에 대한 부분면제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53	미국	국외원천무형자산소득(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자료: OECD, 유해조세제도-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2018. 11.), pp.1-2

■ 유해조세포럼(FHTC)은 Action 5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246개의 조세특례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후에도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시정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허용함³¹⁾

- 2018년 6월 22일 유럽이사회는 EU 회원국들에 대해서 최저 표준부가세율을 영구히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³²⁾

[EU -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s)에 대한 한시적부가세 감면]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0월 2일

■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서적, 신문 등 일반출판물과 동일하게 감면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할 수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대한 최저 표준세율은 15%임

31) EU,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10/02/electronic-publications-council-agrees-to-allow-reduced-vat-rates>, 검색일자: 2018. 11. 20.

3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2018-07호」



■ EU 회원국 내 일부 국가들은 일반출판물에 대해 초감면 부가세율(5% 미만) 또는 제로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B2B, B2C 거래 과세 대상임
- 교육, 통신, 관계회사 간 거래, 면세 서비스³⁵⁾에 대해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지라도 부가세 과세를 제외함

■ 상기 법안은 새로운 부가세 지침이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는 다음의 조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할 경우 VAT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전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주자인 경우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등록된 은행으로부터 용역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 전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소재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경우
- 과세 대상 용역대가가 12개월 동안 총 100만랜드(ZAR, 원화 약 8천만원)를 초과한 경우³⁶⁾

[남아프리카공화국 - 전자서비스 관련 부가세 과세 수정 안발표³³⁾]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24일 전자서비스 관련 부가세 과세 수정안을 발표함

■ 상기 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 부가세 과세 대상인 전자서비스의 범위를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대리인, 전자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함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³⁴⁾

33)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0-29_za.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11. 19.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za>, 검색일자: 2018. 11. 19.
KPMG,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11/tnf-sa-nov15-2018.pdf>, 검색일자: 2018. 11. 19.

34) 해설에 따르면, 인적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금(using minimal human intervention) 제공되는 전자서비스를 과세 대상으로 함. 따라서 해외로부터 이메일을 통한 자문 또는 법률적 조언의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 전자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그러나 ‘최소한의 인적 개입’의 개념을 부가세 과세법안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해설을 통해 설명하였기에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

35)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등

36)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세 기준점이 총용역대가 5만랜드(ZAR)에서 100만랜드(ZAR)로 상향됨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2018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18. 11. 8.)^{1), 2)}

- (경제) 유로지역과 EU 경제는 2017년에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성장(두 지역 모두 2.4%)을 보인 후 온건한(moderate)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19~2020년 중 성장세는 지속되지만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세계 불확실성 고조, 무역 긴장, 고유가 등 대외 환경과 노동시장 개선 둔화, 공급 측면 제약 증가 등이 EU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 노동시장 개선·임금 성장 강세·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우호적인 금융 여건에 따른 투자 등 대내 부문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2.1%, 2019년 1.9%, 2020년 1.7%로 둔화되며 EU 28개국의 성장률 역시 동 기간 2.1%, 1.9%, 1.8%로 전망됨
- (노동) 고용 창출은 계속된 경제성장, 일부 회원

국의 구조개혁에 힘입어 지속되나 그 성장세는 노동력 부족(labour shortage)의 증가와 성장 둔화에 따라 약화될 전망이며, 이와 유사하게 실업률 하락도 지속될 전망이나 그 속도는 둔화될 전망

- 유로지역의 고용 성장률은 2018년 1.4%에서 2019년 1.0%, 2020년 0.9%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2018년 8.4%에서 2019년 7.9%, 2020년 7.5%로 하락
- 이와 유사하게 EU의 고용 성장률도 2018년 1.2%에서 2019년 0.8%, 2020년 0.7%로 하락하고 실업률도 2018년 6.9%에서 2019년 6.6%, 2020년 6.3%로 하락할 전망
- (물가)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은 2018년 4사분기에 정점 도달 후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유가 전망에 따라 2019년 1사분기까지 상승했다가 그 영향이 축소되면서 완만한 모습을 보일 전망
 -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018~2020년 중 각각 1.8%, 1.8%, 1.6%로 전망되고 EU의 인플레이션은 동 기간 2.0%, 2.0%, 1.8%로 전망
 -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임금 증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8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에는 임금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재정)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이자 지출 감소에 힘입어 2018년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

1) EU 집행위,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6254_en.htm,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ip089_en_0.pdf

2) 본 전망은 EU 27개국과 영국 간의 교역 관계가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한다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가정에 기반하며 시점 간 비교를 위해 EU 전망에 영국을 포함함



가 2019년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반등할 전망이고 GDP 대비 채무³⁾는 기초재정수지 흑자와 성장률 - 이자율 차이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감소

-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8년 0.6%에서 2019년 0.8%, 2020년 0.7%로 악화되고 GDP 대비 채무는 동 기간 86.9%, 84.9%, 82.8%로 하락할 전망
- EU의 일반정부 재정적자 역시 2018년 0.7%에서 2019년 0.8%, 2020년 0.7%로 하락 추세가 꺾이고 GDP 대비 채무는 동 기간 81.4%, 79.5%, 77.6%로 하락할 전망

● (리스크) EU 경제는 경제·무역 정책과 관련해 매우 큰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각 리스크들은 상호연계되어 증폭·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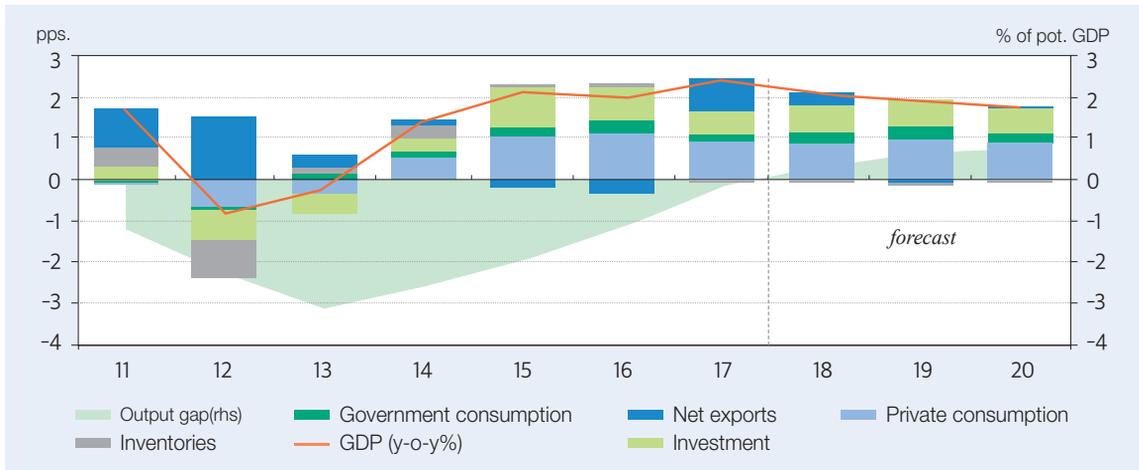
-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 과열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신흥국의 자본시장 혼란과 자본 유출을 일으키고 선진국의 성장·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무질서한 조정 위험을 높여 세계 교역 및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채무 과다 회원국(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소버린(sovrenign) 리스크가 재부상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경제 활동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브렉시트 협상 결과와 관련된 위험도 잔존

[그림 1] 유로지역의 실질 GDP와 구성 요소



출처: EU 집행위,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 Graph I.29.

3) 채무 동학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GDP 대비 총채무를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저장-유량 조정(stock-flow adjustment)으로 분해하여 분석하고 있음. 눈덩이 효과는 누적된 채무로 인한 이자지출 효과, 실질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고, 저장-유량 조정은 현금-발생주의 차이, 금융자산 누적 및 가치 변동, 기타 잔여 효과를 반영함

<표 1> 유로지역 및 EU 28개국의 경제·재정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벨기에	1.5	1.5	1.4	2.3	2.1	1.6	6.4	6.1	5.9	-1.0	-1.1	-1.3
독일	1.7	1.8	1.7	1.8	1.9	1.6	3.5	3.2	3.0	1.6	1.2	1.1
에스토니아	3.5	2.8	2.6	3.5	3.3	2.5	5.7	6.0	6.0	0.5	0.5	0.2
아일랜드	7.8	4.5	3.8	0.7	1.2	1.4	5.6	5.1	4.9	-0.1	-0.1	0.2
그리스	2.0	2.0	2.0	0.8	1.2	1.0	19.6	18.2	16.9	0.6	0.6	0.6
스페인	2.6	2.2	2.0	1.8	1.7	1.5	15.6	14.4	13.3	-2.7	-2.1	-1.9
프랑스	1.7	1.6	1.6	2.1	1.7	1.6	9.0	8.8	8.4	-2.6	-2.8	-1.7
이탈리아	1.1	1.2	1.3	1.3	1.5	1.4	10.7	10.4	10.0	-1.9	-2.9	-3.1
키프로스	3.9	3.5	2.9	0.8	1.3	1.4	8.2	6.3	4.8	2.8	3.0	2.9
라트비아	4.1	3.2	2.9	2.7	2.7	2.4	7.3	6.7	6.5	-0.8	-1.0	-0.7
리투아니아	3.4	2.8	2.5	2.6	2.2	2.1	6.5	6.3	6.3	0.6	0.4	0.1
룩셈부르크	3.1	3.0	2.7	2.0	2.0	1.8	5.3	5.2	5.2	1.3	1.2	0.9
몰타	5.4	4.9	4.4	1.8	1.9	2.0	3.9	4.0	4.0	1.3	1.2	0.7
네덜란드	2.8	2.4	1.8	1.6	2.5	1.7	3.9	3.6	3.6	1.1	1.1	1.0
오스트리아	2.7	2.0	1.8	2.1	2.1	2.0	4.8	4.6	4.4	-0.3	0.0	0.1
포르투갈	2.2	1.8	1.7	1.5	1.6	1.6	7.1	6.3	5.9	-0.7	-0.6	-0.2
슬로베니아	4.3	3.3	3.0	2.0	2.3	2.2	5.6	5.3	5.1	0.5	0.4	0.2
슬로바키아	4.0	4.1	3.5	2.6	2.6	2.4	6.9	6.3	6.0	-0.6	-0.3	-0.1
핀란드	2.9	2.2	1.9	1.2	1.6	1.8	7.8	7.2	6.9	-0.8	-0.2	-0.1
Euro area	2.1	1.9	1.7	1.8	1.8	1.6	8.4	7.9	7.5	-0.6	-0.8	-0.7
불가리아	3.5	3.7	3.6	2.6	2.0	1.8	6.0	5.8	5.7	0.8	0.6	0.6
체코	3.0	2.9	2.6	2.1	2.2	1.8	2.4	2.5	2.6	1.4	0.8	0.7
덴마크	1.2	1.8	1.6	0.8	1.5	1.7	5.2	4.9	4.7	0.2	-0.1	0.6
크로아티아	2.8	2.8	2.6	1.6	1.5	1.4	9.1	7.6	6.6	0.2	0.4	0.1
헝가리	4.3	3.4	2.6	3.0	3.3	3.0	3.6	3.3	3.2	-2.4	-1.9	-1.8
폴란드	4.8	3.7	3.3	1.2	2.6	2.7	3.3	2.9	2.8	-0.9	-0.9	-1.0
루마니아	3.6	3.8	3.6	4.3	3.5	3.3	4.3	4.2	4.1	-3.3	-3.4	-4.7
스웨덴	2.4	1.8	1.8	2.1	1.9	1.6	6.3	6.2	6.2	1.1	0.9	0.8
EU27	2.2	2.0	1.9	1.8	1.9	1.7	7.4	7.0	6.6	-0.6	-0.8	-0.6
영국	1.3	1.2	1.2	2.6	2.0	1.9	4.3	4.5	4.7	-1.3	-1.0	-1.0
EU28	2.1	1.9	1.8	2.0	2.0	1.8	6.9	6.6	6.3	-0.7	-0.8	-0.7
미국	2.9	2.6	1.9	2.5	2.4	2.2	3.9	3.5	3.5	-5.8	-6.0	-6.0
일본	1.1	1.0	0.5	0.8	1.0	1.3	2.7	2.6	2.5	-3.3	-3.1	-2.8
중국	6.6	6.2	5.9	1.8	2.0	:	:	:	:	:	:	:
세계	3.7	3.5	3.5	:	:	:	:	:	:	:	:	:

주: 1)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출처: EU 집행위,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 table 1.



■ EU 조정위원회, 2019년 예산안 합의 결렬(2018. 11. 19.)^{4),5)}

- 이사회와 의회 동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실패
- EU 기능조약(TFEU) 제314조에 따라 집행위가 새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동 조약 제3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예산이 채택되지 않으면 내년에 잠정예산(system of provisional twelfth)이 적용되어 매월 전년도 예산의 1/12 이하를 지출할 수 있음

■ 유로그룹, 유로존 예산 논의(2018. 11. 19.)⁶⁾

- 프랑스와 독일이 경쟁력 촉진 및 유로지역의 수렴·안정화를 위해 EU 프레임워크 내 유로존 예산(Eurozone Budget) 조성을 제안
- (배경) 전 유로지역(euro area)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로존(Eurozone) 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수렴과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유로존 예산은 유로존에 국한되며 유로지역 회원국의 투자 및 개혁을 지원할 계획

- (예산 구조) 유로존 예산은 EU 예산의 일부가 되며, 이는 EU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전 재정 관리, 예산 통제, 의회 책임성 측면에서 예산 원칙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
- (재원) 기본적으로 세수 배분[예를 들어, 프랑스 금융거래세(FTT)와 EU 재원(개혁 전달 도구(reform delivery tool)⁷⁾ 등]을 포함하는 외부 할당 수입으로 마련하며 유로존 회원국의 정부 간 협약(IGA)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의 정기 기여금으로 징수되는 내부 할당 수입으로도 충원
- (거버넌스) 유로존 예산은 EU의 예산의 일부로서 EU 예산 관련 일반 규칙과 기본법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유로 정상회의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운영될 예정
- (다년도 재정 체계⁸⁾와의 연계) 유로존 예산 규모는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다년도 상한으로 규율되며 이는 MFF 관점에서 협의될 계획

4)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19: Conciliation ends without agreement, 2018. 11. 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11/19/eu-budget-for-2019-conciliation-ends-without-agreement/> EU 의회, EU Budget 2019: no deal before the end of the conciliation period, 2018. 11. 19.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81119IPR19450/eu-budget-2019-no-deal-before-the-end-of-the-conciliation-period>

5) 지난 5월 집행위가 발표한 2019년 EU 예산안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 pp.41~42를 참고바람

<http://www.kipf.re.kr/Publication/B/2018-상반기-KIPF-재정동향/525546>

9월 이사회가 발표한 예산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8년 9월 제1호, 2018, pp.2~3을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년-9월-제1호-재정동향-/525577

10월 의회가 발표한 예산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8년 10월 제2호, 2018, pp.2~3을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년-10월-제2호-재정동향-/525621

6) 유로그룹, Eurogroup, 19/11/2018, 2018.11.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group/2018/11/19/>

유로그룹, Proposal by France and Germany on the architecture of a eurozone budget, 2018. 11. 19.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7011/proposal-on-the-architecture-of-a-eurozone-budget.pdf>

7) 지난 5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202~2027 다년도 재정 체계의 신규 수단 중 하나인 개혁 지원 프로그램(Reform Support Programme)의 일부분임. 개혁 지원 프로그램은 European Semester 관점에서 우선순위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전 회원국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

8) 다년도 재정 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는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EU가 각기 다른 정책 분야에서 해마다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연간 예산을 규율한 것으로, 각 연도 예산은 다년도 재정 체계를 준수해야 함. 특수 기금은 다년도 재정 체계 밖에서 운영됨

- EU 집행위, 이탈리아 예산계획안의 안정성장협약 (SGP) 위반 확인(2018. 11. 21.)⁹⁾
 - 집행위는 해당 회원국과 협의 후 회원국의 예산 계획안¹⁰⁾이 ‘특별히 심각하게 SGP를 위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회원국에 수정된 예산계획안을 요구해야 하며 지난 10월 23일 이탈리아에 3주 내 수정 제출을 공식 요구한 바 있음¹¹⁾
 - 11월 13일 이탈리아가 예산계획안 수정안을 제출
 - 11월 21일 집행위는 개정된 2019년 예산계획안과 2018년 가을 전망에 기초해 2018년 7월 13일 이사회의 권고를 ‘특별히 심각하게 위반함’을 확정
 - 개정된 예산계획안과 집행위 전망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지출 기준은 이사회 권고로부터 GDP 대비 2019년 1.5%, 2018~2019년 평균 1.3%의 심각한 편차가 나타나고 채무 역시 약 130%로 전망되어 채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됨

- EU 집행위, SGP 관련 권고 발표(2018. 11. 21.)¹²⁾
 - 집행위와 이사회는 지난 5~6월 헝가리와 루마니아에 중기재정목표(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¹³⁾ 이탈을 경고하고 특히 심각한 위반 절차(Significant Deviation Procedure: SDP)와 관련해 루마니아의 기존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의결
 - 지출 증가율을 헝가리는 2018년 2.8%(1%), 루마니아는 2018년 3.3%(0.8%), 2019년 5.1%(0.8%, 이상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감축 수준) 미만으로 설정하도록 권고·결정¹⁴⁾
 - 집행위는 두 국가의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헝가리에 2019년 GDP 대비 최소 1%의 구조적 재정수지 감축을 추가 권고하고 루마니아에도 2019년 최소 1%의 감축을 수정 권고

9) EU 집행위, Commission opinion on the 2019 Budgetary Plan of Italy, 2018. 11. 21.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c-2018-8028-it_en_0.pdf

10) GDP 대비 재정수지 목표, 정책 불변하의 GDP 대비 수입-지출 전망, 안정 성장 경로를 고려한 GDP 대비 수입-지출 목표,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정보, 기타 부속서 등을 수록

11)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8년 10월 제1호, 2018, pp.2~3을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년-10월-제1호-재정동향/525610

12) EU 집행위, Recommendation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with a view to correcting the significant observed deviation from the adjustment path toward the 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 in Hungary, 2018. 11. 21.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com-2018-805_hu_en_0.pdf

EU 집행위, Recommendation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with a view to correcting the significant observed deviation from the adjustment path toward the 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 in Romania, 2018. 11. 21.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com-2018-802_1_ro_en.pdf

13) 회원국은 집행위의 최소 MTO 추정치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1% 미만의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해야 하며,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매년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5%씩 개선해야 함

14)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 pp.56~58을 참고바람

<http://www.kipf.re.kr/Publication/B/2018-상반기-KIPF-재정동향/525546>



<표 2> SDP와 EDP 비교

구분	심각한 위반절차 (Significant Deviation Procedure)	초과 적자 시정절차 (Excessive Deficit Procedure)
SGP	예방적 조치	교정적 조치
조건	구조적 재정수지지표와 지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TO로부터 상당한 이탈이 관측될 경우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초과하거나 채무가 60%를 초과하되 매년 채무지표와 채무 기준 간 차이의 1/20만큼 감축하지 못한 경우
절차	집행위가 회원국에 조기 경고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정	집행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정
제재	GDP의 0.2%에 해당하는 유이자 지급부 예치금 제재 가능	GDP의 0.2%에 해당하는 무이자 지급부 예치금 또는 벌금 부과 등 제재 가능
기타	EDP 개시 전 회원국이 MTO로부터 이탈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출처: EU 집행위 홈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_en을 참조하여 정리

■ EU 집행위, 2019 연간성장보고서(Annual Growth Survey) 발표(2018. 11. 21.)¹⁵⁾

- 공정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세계 경제 충격으로부터의 완충 능력 강화를 위해 투자 촉진, 구조개혁 추구, 책임 있는 재정 보장 등 '선순환 삼각형(virtuous triangle)'을 바탕으로 차년도 경제·사회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
- 연구·혁신, 교육·훈련·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

자 강화

- 혁신 확산과 새로운 시장 창출, 디지털 인프라 확장 및 올바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강력한 과학-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해야 함
- 평생 학습을 가능케 하고 격려하면서,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필요에 적합한 기술을 갖추게 해야 하며, 저숙련 노동자의 적응과 교육·훈련 불평등 해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유럽의 산업, 운송 및 에너지 시스템의 현대화와 탈탄소화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
- 생산성 향상, 포용성 강화 및 제도적 품질 향상을 위한 개혁
 - 생산성 향상이 국가 개혁의 중심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일부 회원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진입 및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개혁이 더욱 필요
 - 포용성 역시 개혁 노력의 핵심에 두어야 하며 생산성 수익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공공 행정의 효율성,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 규제 환경의 품질과 안정성, 부패 방지 및 법치 존중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여 제도적 품질 향상 또한 초점을 두어야 함
- 거시 금융 안정과 건전한 재정 보장
 - 공통된 유럽 준칙에 따라 합의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중요

15) EU 집행위, 2019 European Semester: Annual Growth Survey, 2018. 11. 21.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le_import/2019-european-semester-annual-growth-survey_en_1.pdf

- 거시경제 안정성과 회원국 재정 정책의 중요 요소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 품질 및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고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장 역시 핵심적임

■ EU 집행위, 2019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발표(2018. 11. 21.)^{16), 17)}

- (진반적 평가) 금융 부문의 일부 문제 완화를 포함하여 EU의 거시 경제 불균형¹⁸⁾에 대한 교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수 문제 잔존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특정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채무감축이 경제성장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충분한 속도로 교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부실 채권의 규모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음
- (국가별 평가) 2019년 심층검토 대상 국가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

덴, 그리스, 루마니아 13개국이며 해당국에 대해 2019년 2월 심층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EU 집행위, 유로지역 회원국의 2019 예산계획안 평가 발표(2018. 11. 21.)¹⁹⁾

- 유로지역 19개 회원국이 제출한 예산계획안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발표
- (경제전망) 집행위는 2018 가을 경제전망²⁰⁾에서 유로지역 경제가 2018년 2.1%, 2019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각국 예산계획안의 거시경제 시나리오도 동 기간 2.1%,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재정전망) 유로지역의 GDP 대비 총재정적자는 2018년 0.6%, 2019년 0.8%로 집행위 전망과 회원국 예산계획안 전망이 일치하고, GDP 대비 채무는 집행위가 2018년 87.3%에서 2019년 85.1%, 회원국이 동 기간 86.9%에서 84.9%로 전망
- (SGP 이행 평가) 이탈리아의 계획안이 ‘특별히

16)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 The Autumn Package explained, 2018. 11. 2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6463_en.htm
 EU 집행위, 2019 European Semester: Alert Mechanism Report, 2018. 11. 21.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le_import/2019-european-semester-alert-mechanism-report_en_0.pdf

17) 경고체계 보고서는 EU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감시체계인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의 일환임
 MIP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 점검 및 경고, 심층 검토, 정책 권고 불이행 국가 제재 등의 절차로 구성됨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macroeconomic-imbalance-procedure/dealing-macroeconomic-imbalance_en

18) 거시경제 불균형은 'EU 회원국, EMU, 또는 EU 경제의 적절한 기능에 부작용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거시경제적 변동을 일으키는 추세, 초과불균형은 'EMU의 적절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정의.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청년실업률 등 대내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14개의 주요 지표와 25개의 보조 지표를 기초로 평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macroeconomic-imbalance-procedure/scoreboard_en

19) EU 집행위, 2019 Draft budgetary plans Overall Assessment, 2018. 11. 21.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comm_chapeau_211118.pdf
 각 회원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19_en

20) 가을 경제전망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8년 11월 제1호, 2018, pp.2~4를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년-11월-제1호-재정동향-/525641



심각하게 SGP를 위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회원국의 경우 계획안에서 제시된 재정 노력이 SGP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음

- (예방적 조치 국가) 독일 등 10개국은 SGP를 준수하고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은 SGP를 대체로 준수할 것으로 평가되며 벨기에 등 4개국은 위반 가능성 있음
- (교정적 조치 국가) 스페인²¹⁾이 SGP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표 3> 안정성장협약 이행 평가 결과

구분	국가	국가수
(예방적 조치 국가)		
SGP 준수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10
SGP 대체로 준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3
SGP 위반 가능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4
SGP 특별히 심각하게 위반	이탈리아	1
(교정적 조치 국가)		
SGP 위반 가능	스페인	1

■ EU 집행위, 협상단 차원의 브렉시트 협정 합의 (2018. 11. 14.)^{22), 23)}

- 시민권, 재정 분담금, 이행 기간, 거버넌스, 아일랜드, 지브롤터 및 키프로스 의정서, 기타 분리 문제 등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한 모든 요소를 다룸
- 특히, 양측 대표들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통제(hard border)²⁴⁾를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
 - 이행 기간 종료 이후부터 후속 합의가 적용될 때까지 단일 관세지역을 적용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관련 특별 정상회의 개최 (2018. 11. 25.)²⁵⁾

- EU 정상들은 협상단이 제출한 브렉시트 협정을 인준하고 EU-영국의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승인
 - EU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EU의 원칙, 특히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완전성과 네 가지 자유의 불가분성에 부합해야 함
 - 또한 영국의 주권과 영국 내부 시장의 보호를 보장해야 하고, 독립적인 무역 정책의 발전과 EU와 영국 간 자유 이동의 종료를 포함하여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함

21) 프랑스의 EDP가 종료되어 스페인이 유일한 EDP 적용 국가로 남음.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 pp.56~58을 참고바람. <http://www.kipf.re.kr/Publication/B/2018-상반기-KIPF-재정동향/525546>

22) EU 집행위,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s to the European Council (Article 50) to find that decisive progress has been made in Brexit negotiations, 2018.11.14.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6424_en.htm

23) 협정 초안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EU 집행위, Draft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s agreed at negotiators' level on 14 November 2018, 2018. 11. 14.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draft_withdrawal_agreement_0.pdf

24) 국경통제 관련 브렉시트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8년 9월 제2호, 2018, pp.4~5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년-9월-제2호-재정동향/525586

25) EU 이사회,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 (Art. 50), 25/11/2018, 2018. 11. 25.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18/11/25/EU-이사회, Political declaration setting out the 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2018. 11. 22.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7100/20181121-cover-political-declaration.pdf>



OECD

■ 2018년 3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18. 11. 20.)²⁶⁾

● OECD 지역 2018년 3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5%로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하였고, 유럽연합과 유로지역 또한 전분기 대비 0.2%p씩 하락한 0.3%, 0.2%를 기록

- G7 국가 중 일본(0.8%→0.3%)과 독일(0.5%→0.2%)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고, 미국(1.0%→0.9%), 이탈리아(0.2%→0.0%)는 다소 하락

- 반면, 영국(0.4%→0.6%), 프랑스(0.2%→0.4%)는 다소 상승

※ 한국: (2018년 2사분기) 0.6%, (3사분기)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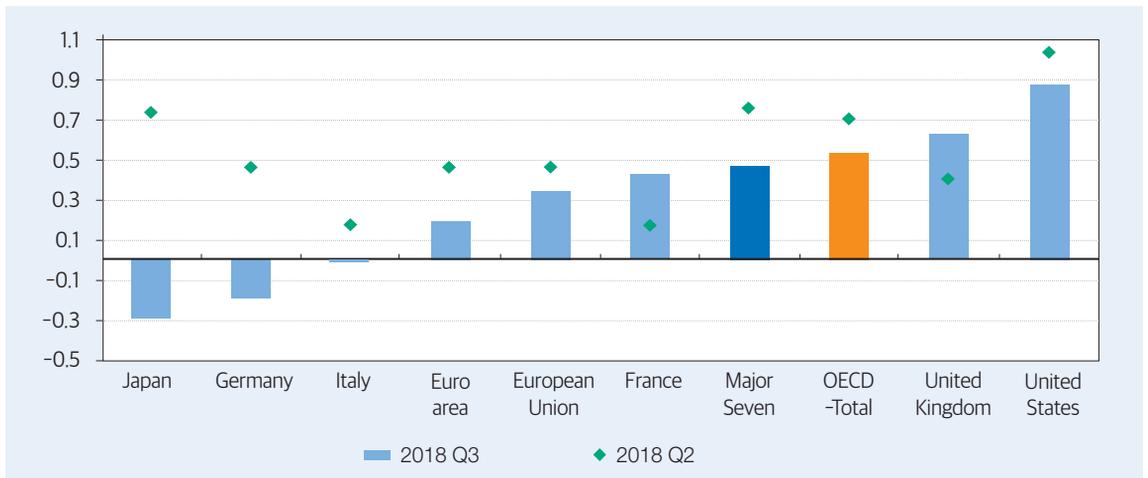
● OECD 지역 2018년 3사분기의 전년동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2.4%로 2018년 2사분기 성장률 2.5%에 비해 0.1%p 하락

- G7 국가 중 미국이 3.0%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0.4%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한국: (2018년 2사분기) 2.8%, (3사분기) 2.0%

[그림 2] 2018년 3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출처: OECD Newsroom, 2018. 11. 20.

26) OECD Newsroom, "OECD GDP growth slows to 0.5% in third quarter of 2018", 2018. 11. 20. <http://www.oecd.org/newsroom/gdp-growth-third-quarter-2018-oecd.htm>



<표 4> 2018년 3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년동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1.6	2.1	2.2	2.5	2.8	2.7	2.6	2.5	2.4
G20	3.0	3.4	3.4	3.7	4.0	3.9	3.9	3.9	-
유럽연합	1.9	2.1	2.2	2.5	2.8	2.6	2.3	2.1	1.9
유로지역	1.8	2.1	2.1	2.5	2.8	2.7	2.4	2.2	1.7
G7	1.4	1.7	1.8	2.1	2.3	2.3	2.1	2.2	2.0
캐나다	1.5	2.0	2.3	3.8	3.1	3.0	2.3	1.9	-
프랑스	0.9	1.2	1.4	2.3	2.7	2.8	2.1	1.7	1.5
독일	2.1	1.9	2.1	2.2	2.7	2.8	2.0	1.9	1.2
이탈리아	0.8	1.0	1.3	1.6	1.7	1.6	1.4	1.2	0.8
일본	1.0	1.5	1.3	1.6	2.0	2.0	1.1	1.4	0.4
영국	1.7	1.7	1.8	1.9	1.8	1.4	1.1	1.2	1.5
미국	1.5	1.9	1.9	2.1	2.3	2.5	2.6	2.9	3.0

출처: OECD Newsroom, 2018. 11. 20.

■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2018 November* 발표(2018. 11. 21.)²⁷⁾

* OECD는 매년 보통 3월과 9월에 간략본 형태의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5월과 11월에는 경제전망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

- 동 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하 내용은 개요(Introduction) 요약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바람

- (경제 전망) 정점을 찍은 세계 경제는 점차 완화되어 2018년 3.7%, 2019년과 2020년에는 모두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는 정책지원과 강한 고용 성장세가 국내 수요를 지지하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시경제 정책은 덜 경기확장적(less accommodative)이 될 것으로 전망
 - 무역긴장으로 인한 역풍, 금융완화 축소, 유

- 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OECD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낮아져 2017~2018년 2.5%에서 2020년에는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승이 전망되나 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음
 - 올해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승시켰고, 몇몇 국가에서 수입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이 시작된 바 있음
- 세계 무역성장률은 2018~2020년 동안 연평균 4%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무역 제재조치(trade restriction)가 신뢰도나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무역 둔화는 이미 시작된 상황

27) OECD Newsroom, "OECD GDP growth slows to 0.5% in third quarter of 2018", 2018. 11. 20. <http://www.oecd.org/newsroom/gdp-growth-third-quarter-2018-oecd.htm>

<표 5>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1~2018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18 Q4	2019 Q4	2020 Q4
실질 GDP 성장률¹⁾								
세계	3.4	3.6	3.7	3.5	3.5	3.5	3.6	3.5
G20	3.6	3.8	3.8	3.7	3.7	3.7	3.8	3.7
OECD	2.1	2.5	2.4	2.1	1.9	2.2	2.1	1.9
미국	2.3	2.2	2.9	2.7	2.1	3.1	2.4	2.0
유로지역	1.2	2.5	1.9	1.8	1.6	1.5	1.9	1.4
일본	1.3	1.7	0.9	1.0	0.7	0.6	0.6	1.1
Non-OECD	4.6	4.6	4.7	4.7	4.7	4.6	4.8	4.7
중국	7.1	6.9	6.6	6.3	6.0	6.4	6.1	6.0
인도	7.0	6.7	7.5	7.3	7.4	-	-	-
브라질	0.1	1.0	1.2	2.1	2.4	-	-	-
총산출 갭(Output gap)	-1.8	-1.0	-0.6	-0.4	-0.5	-	-	-
실업률	6.9	5.8	5.3	5.1	5.0	5.2	5.1	4.9
인플레이션	1.6	2.0	2.3	2.6	2.5	2.6	2.5	2.5
재정수지	-4.1	-2.3	-2.9	-3.1	-3.0	-	-	-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3.6	5.2	3.9	3.7	3.7	3.3	3.8	3.6

주: 1) % change, 마지막 세 열은 전년 대비 증가를 나타냄

출처: OECD Newsroom, 2018. 11. 20.

- (위험 요인)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 공급 주도의 원유시장, 신흥국의 불안정한 금융시장 등의 하방위험과 무역긴장의 조기 해결, 강한 구조정책 등의 상방위험 존재
 - 미국·중국의 양국 간 무역장벽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은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국 생산량을 높일 것임
 - 공급자 주도의 원유시장 혼란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음
 - 선진국의 가파른 물가상승이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과 새로운 자산 재평가를 야기할 경우,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무역긴장의 조속한 해결 또는 강력한 구조정책은 신뢰를 높이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둔화를 제한할 수 있음
- (정책 권고)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막고 다자간 대화를 통해 국제규칙 기반의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나 그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
-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최근 몇 년 간의 재정완화 기조에서 2019~2020년 중립적인 재정기조가 전망되나 경제전망을 고려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공공채무가 높은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재정완화는 금융시장에서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흥국의 경우 정책 신뢰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 모든 국가들은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 경제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초당파 싱크탱크,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²⁸⁾),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의회 진행사항 발표 (2018. 11. 19.)²⁹⁾
 - FY2019³⁰⁾ 미 연방예산은 총 12개의 「세출예산법」 가운데 총 5개만 통과하여, 현재 7개 분야의 세출예산이 임시예산(만료시한: 2018. 12. 7.까지)으로 집행되고 있음
 - 의회 통과 「세출예산법」³¹⁾
 - ① 군사시설/보훈, ② 에너지/수자원 개발, ③ 입법 등 3개³²⁾ 분야로 구성된 1st minibus(부분예산)법³³⁾
 - ④ 국방, ⑤ 노동/보건/인적자원/교육 등 2개³⁴⁾ 분야로 구성된 2nd minibus(부분예산)법³⁵⁾
 - 의회에 계류 중인 세출법안³⁶⁾

28)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29) CRFB, <http://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19>

30) 2019 회계연도 기간: 2018. 10. 1~2019. 9. 30.

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8년 9월 제2호, 2018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_View/2018년-9월-제2호-재정동향/525586

32) ① 군사시설/보훈(Military Construction/Veterans Affairs), ② 에너지/수자원 개발(Energy/Water Development), ③ 입법(Legislative)

33) P.L. 115-244

34) ④ 국방(Defense), ⑤ 노동/보건/인적자원/교육(Labor/Health/Human Services/Education)

35) P.L. 115-245

36) ① 내무/환경(Interior/Environment), ② 금융(Financial Services), ③ 농업(Agriculture), ④ 교통/주택/도시개발(Transportation/Housing/Urban Development) 등 4개 분야가 포함된 3rd minibus 법안을 포함하여 ⑤ 통상/사법/과학(Commerce/Justice/Science), ⑥ 국무부/외교(State/Foreign operations), ⑦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분야

37) H.R. 6147

- ① 내무/환경, ② 금융, ③ 농업, ④ 교통/주택/도시개발 등 4개 분야가 포함된 3rd minibus(부분예산)안³⁷⁾을 포함하여 ⑤ 통상/사법/과학, ⑥ 국무부/외교, ⑦ 국토안보 분야 세출법안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주 이유로 멕시코 국경장벽(southern border wall) 건설 예산이 거론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국경장벽을 위한 예산으로 50억달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원 민주당 척 슈머(Chuck Schumer)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승인한 16억달러 규모의 현 회계연도 국경장벽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응수³⁸⁾
-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 일시폐쇄(government shutdown)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임³⁹⁾

[기타]

■ 미 백악관, 10월 고용지표(전달 대비 25만명 증가) 발표(2018. 11. 2.)⁴⁰⁾

- (고용) 백악관은 노동부 노동통계국(BLS⁴¹⁾) 자료를 인용. 지난 10월 비농업 부문(nonfarm payroll employment) 고용자 수는 전달 대비 25만명(예상보다 5만명 이상 초과) 증가
 - 2018년 월평균 고용자 수(employment level)는 21만 3천명으로, 2016년(19만 5천명)과 2017년(18만 2천명) 수치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누적된 총고용자수는 총 450만 명 수준
 - (실업률) 10월 실업률은 3.7%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히스패닉계의 실업률 또한 1973년 이래 최저치인 4.4%로 집계

38)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aponline/2018/11/28/us/politics/ap-us-trump-border-wall.html>, 2018. 11. 28.

39)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1-17/trump-says-it-s-good-time-to-shut-down-government-over-border>, 2018. 11. 17.

40)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s-economy-creates-250000-jobs-october-beating-expectations/>

41) BL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2019년도 예산편성 등에 관한 건의 발표 (2018. 11. 20.)⁴²⁾

- 재무성의 재정제도 등 심의회⁴³⁾는 2019년도 예산편성 및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한 건의를 정리하여 발표
- 향후 재정운영에 대해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신경제·재정재생계획’⁴⁴⁾에서의 세출규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에 기반한 정책입안을 추진할 필요
 - (사회보장) 사회보장관계비를 ‘고령화로 인한 증가분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하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개호(간병)제도 개혁을 시행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보험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보험급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 고령화 및 지원인력 감소 실정에 맞는 공평한 부담이 필요
 - (지방재정) 일반재원 총액에 대해 2018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실질적으로 동일 수준) 확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진행

- 지방재정계획에서의 세출 계상 시 적정성 검증 필요, 사회보장비 억제에 노력할 필요, 도부현(都道府県)의 주체적인 역할을 완수할 필요, 지방법인 과세의 편차 시정 필요
- (문교·과학기술) 공공지출 수준에 대해 예산의 양이 아닌 예산의 사용방법이 주요 과제
 - 정량적·객관적인 증가 및 PDCA 사이클⁴⁵⁾ 확립을 전제로 한 교직원 수 증가, 교원의 무 재검토, 교육의 질 체크 등 대학개혁 추진, 과학기술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필요
 - (사회자본 정비) 질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침 지속 필요, 유효성이 높은 방재·감재 대책 추진을 위해 국가의 개별 보조를 통한 계획적·집중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 기존 재고의 유효 이용, 민간자금·신기술 등의 활용 추진 필요
 - (농림수산) 농지 집적·집약화를 위한 협력금에 대해, 농지의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지원의 축을 이전할 필요

42)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編成等に関する建議」, 2018. 11. 20.

https://www.mof.go.jp/about_mof/councils/fiscal_system_council/sub-of_fiscal_system/report/zaiseia301120/04.pdf

43) 재무성 소관 심의회로 국가의 예산과 결산, 재정투·융자 등을 조사 및 심의하는 재무성 장관의 자문기관. 학자, 기업경영인 등 지식인들로 구성

44) 2018년 6월 각의 결정된 내각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의 실현」에서 책정한 계획으로, 2019~2021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사회보장관계비, 사회보장관계비 외 일반세출, 지방세출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 pp.129~132(일본편) 참고

<http://www.kipf.re.kr/Publication/B/2018-상반기-KIPF-재정동향/525546>

45)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이클은 Plan(정책기획입안, 성과목표 설정)→Do(정책 시행)→Check(행정사업 리뷰·정책 평가)→Action(예산 요구)을 의미

- (에너지·환경) 에너지 관계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성과 없는 사업의 필요성 등 재검토 시행 필요,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해 규제적인 방법과 조합하는 등 세출예산의 중점화를 도모할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에 대해 공평·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분야·대상의 중점화 필요, 일본정책금융공고(Japan Finance Corporation)의 중소기업 대상 용자에 적용되는 특별 이율에 대해 정책유도 효과를 고려한 방식 검토 필요
- (출입국 체류관리·치안관계) 출입국체류 관리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 실현 및 재원 확보 등을 검토하면서 행정 수요 증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 치안에 대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2019~2020년도의 각종 대규모 행사에 대응할 필요
- (외교관계)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무성에서는 계약가능 금액 및 정책적 중요성에 입각한 기술협력 안건을 선정할 필요, 국제기구 등 출자금에 대한 외무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
- (방위) 향후년도 부담의 적절한 관리, 계획단가 준수 등 도모 필요, 조달개혁을 통한 1조엔 이상의 합리화 효과를 목표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기타]

■ 내각부, 2018년 3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18. 11. 14.)⁴⁶⁾

- 2018년 3분기 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0.3%(연율-1.2%)로 1.1%p 하락하였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0.3%(연율 -1.1%)를 기록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 수요 기여도는 -0.2%, 재화·서비스 순수출 기여도(외수)는 -0.1%를 나타냄
 - (민간 수요) 민간 수요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2%로, 민간 최종소비지출과 민간설비 투자는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민간주택 투자는 증가
 - 민간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0.1%로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등의 감소에 기인하여 2사분기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민간설비 투자 증가율은 -0.2%, 민간주택 증가율은 0.6%를 나타냄
 - (공적수요) 공적 수요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2%로, 정부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0.2%로 7사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공적 투자 증가율은 -1.9%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46) 내각부, 「2018(平成30)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8. 11. 14.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 수출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8%로 자동차 및 여행(방일 외국인 국내 소비) 등의 감소에 기인하여 5사분기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4%를 나타냄

<표 6> 2018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1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분기 대비%, %p)

항목	2017년		2018년				2018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기여도 ¹⁾	3분기 연율환산
국내총생산(GDP)	0.7	0.2	-0.3	0.8	-0.3	-	-1.2
국내 수요	0.1	0.3	-0.3	0.9	-0.2	(-0.2)	-0.8
민간 수요	0.3	0.5	-0.4	1.1	-0.2	(-0.2)	-0.8
민간 최종소비지출	-0.6	0.3	-0.2	0.7	-0.1	(-0.1)	-0.5
민간주택 투자	-1.8	-3.2	-2.1	-1.9	0.6	0	2.6
민간설비 투자	1.5	0.7	0.7	3.1	-0.2	(-0.0)	-0.9
민간재고 증감	-0.4	-0.2	(-0.2)	0	-	(-0.1)	-
공적 수요	-0.4	-0.1	-0.1	0.1	-0.2	(-0.1)	-0.9
정부 최종소비지출	0.1	0	0	0.2	0.2	0	0.7
공적 투자	-2.2	-0.8	-0.5	-0.3	-1.9	(-0.1)	-7.5
공적 재고 증감	0	0	(-0.0)	0	-	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6	(-0.1)	-0.1	(-0.1)	-	(-0.1)	-
재화·서비스 수출	2.7	2.1	0.5	0.3	-1.8	(-0.3)	-7.1
재화·서비스 수입	-1	3.1	0.1	1	-1.4	-0.2	-5.6

주: 1) ()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8(平成30)年7-9月期四半期別 GDP 速報(1次速報値)」, 2018. 11. 14.



독일

[예산·결산 등]

■ FY2019 예산안 연방하원 통과(2018. 11. 23)⁴⁷⁾

- 지난 7월 6일 연방정부는 3,568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하원에 상정
- 하원은 11월 23일 정부안 대비 약 4억유로 감액된 3,564억유로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은 동일)

[기타]

■ 연방 통계청, 2018년 3사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8. 11. 23.)⁴⁸⁾

- 2018년 3사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세 둔화
 - 국제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대비 수입 증가, 대외무역은 성장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설비 투자 및 건설은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는 다소 감소
- 3사분기 고용자 증가 수는 연초 대비 1.3%(55만 6천명) 증가한 4,500만명 기록

<표 7>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연도	분기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7	1	1.1	3.4
	2	0.5	0.9
	3	0.6	2.2
	4	0.5	2.2
2018	1	0.4	1.4
	2	0.5	2.3
	3	-0.2	1.1

주: 연쇄가격조정, 계절조정 적용
출처: 통계청, Press release, 2018. 11. 23.

■ 연방정부, 인공지능 육성 전략(Strategie Künstliche Intelligenz)*을 위한 투자 결정(2018. 11. 15.)⁴⁹⁾

* 독일의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이며, 2018년 7월에 경제에너지부, 교육과학부, 노동사회부가 공동의 결서 발표

- 독일정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3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인력 양성과 AI 관련 중소기업 및 수출주도기업 지원에 집중
 - 국가적 차원에서 12개의 리서치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대학과 연계를 통해 100명의 핵심 연구진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
 - 중소기업 4.0(Mittelstand 4.0)⁵⁰⁾을 통해 연간 1천개 회사를 지원할 계획

47) 연방정부, Presse, 2018. 11. 2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icherheit-fuer-kommende-generationen-1552714>

48) 연방통계청, Presse, Pressemitteilung, 2018. 11. 23.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8/11/PD18_454_811.html;jsessionid=A4407077A40D0316DD2CD3854EB3EBFA.InternetLive1

49) 연방정부, Strategie Künstliche Intelligenz der Bundesregierung(2018. 11.)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92814/1550276/3f7d3c41c6e05695741273e78b8039f2/2018-11-15-ki-strategie-data.pdf?download=1>

50) 중소기업 4.0(Mittelstand 4.0): 2015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4.0은 독일 내 지역별로 역량강화센터(Competence Center)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간 전문지식, 실제 사례, 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 경제에너지부가 전담하여 핵심사업 분야 운영(BMWi, 2018)



프랑스

■ 예산·결산 등

■ FY2018 수정예산법안(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8: PLFR) 발표(2018. 11. 7.)⁵¹⁾

- 이번 수정예산법안은 정책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 「예산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됨
- (경제전망)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7%로 2018년 「예산법」 및 2019년 예산법안의 전망치와 동일
 - 하지만 통계청은 10월 전망에서 2018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였고,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는 수정예산안의 전망치 1.7%가 조금 높게 설정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재정전망) 2018년 수정예산법안의 재정적자는 본예산 대비 57억유로 감소한 800억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6%로 전망되어, 2017년에 이어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이하⁵²⁾를 달성할 전망
 -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는 2.2%를 기록할 전망으로, 예산법안 대비 1%p 높아질 것으로 전망

<표 8> FY2018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8년 예산법안 (PLF)	2018년 수정예산법안 (PLFR)
재정지출	386.5	387.1
재정수입	299.8	306.9
조세수입	286.6	293.3
세외수입	13.2	13.6
특별회계	1.0	0.2
총재정수지	-85.7	-80.0

출처: PLFR 2018.

■ 기타

■ 프랑스 통계청, 2018년 3분기 실업률 잠정치 발표(2018. 11. 20)⁵³⁾

- 2018년 3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직전 분기와 동일하고, 전년 동기 대비 0.5%p 감소한 8.8%를 기록
 - 해외 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9.1%로 직전분기와 동일하고, 전년동기 대비 0.5%p 감소함
 - 15~24세 인구의 실업률은 직전분기 대비 증가하였고, 50세 이상의 실업률은 직전분기 대비 감소함
 - 실업자 수는 직전분기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257만명으로 나타남
- 장기 실업률⁵⁴⁾은 3.4%로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하였고, 전년 대비로는 0.8%p 하락함

51)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9/presentation-en-conseil-ministres-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18#.W-jk1vkS-Uk>

52)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각각 3%, 60%로 제한해야 함

53)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2018. 11. 2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648427>

54)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한 실업자의 비율

<표 9>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천 명)

구분	2018 Q2	2018 Q3 잠정	증감		2018 Q3 실업자 수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8.8	8.8	0.0	-0.5	2,567
15~24세	20.2	20.6	0.4	-0.9	581
25~49세	8.2	8.2	0.0	-0.7	1,456
50세 이상	6.3	6.1	-0.2	-0.3	530
장기 실업률	3.6	3.4	-0.2	-0.8	998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18. 11. 20.



영국

[예산·결산 등]

■ 보건사회복지부,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보고서 발표(2018. 11. 5.)⁵⁵⁾

- 보건의료의 초점을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예측 의료(predictive medicine) 강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제시
 - (현황) 영국은 질병 치료에 연간 970억파운드의 공공자금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질병 예방에는 8억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음
 - (목표) 2035년까지 건강기대수명을 5년 이상 개선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를 축소함

* 이 목표는 올해 5월, 테레사 메이 총리가 'Ageing Society Grand Challenge'⁵⁶⁾의 미션으로 제시한 내용임

- (내용)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에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
- 주요 계획
 -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지원 장려 및 산업 보건에 대한 접근 기회 개선 조치에 대해 의견수렴 시행 예정
 - 2020~2021년까지 추가로 3만명의 여성에게 임신 및 출산 후 1년 동안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2030년까지 아동 비만 절반 감축
 -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2023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처방(social

55)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Health Secretary launches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vision, 2018. 11. 5.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alth-secretary-launches-prevention-is-better-than-cure-vision>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our vision to help you live well for longer, 2018. 11. 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evention-is-better-than-cure-our-vision-to-help-you-live-well-for-longer>

56) 정부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Ageing Society Grand Challenge'는 고령화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 prescribing)⁵⁷⁾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초기 암 진단율 제고(2028년까지 암 발병의 75%를 1~2기에 진단)
- 5년 동안 500만개의 유전체 분석 추진, 2019년까지 모든 중증 질환·암 환자(어린이)와 희귀 질환·암 환자(성인)에게 전장 유전체 분석(whole-genome sequencing)⁵⁸⁾ 제공 등

[기타]

- 2018 국가 인프라 및 건설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 2018)⁵⁹⁾ 분석 발표(2018. 11. 26.)⁶⁰⁾
 - 영국 인프라사업청(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IPA)은 향후 10년(FY2018-19부터 FY2027-28년) 동안의 공공 및 민간 인프라 투자 규모를 약 6,090억파운드로 추계함
 - * 2017년부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종합적·중장기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이 발표된 투자 규모 외에도 향후 10년 기간에 대한 투자 규모 추계를 제시하고 있음
 - 분야별로 경제적 인프라(공공) 투자 2,220억

- 파운드, 사회적 인프라(공공) 투자 1,110억파운드, 민간 투자 1,860억파운드, 공공 설비 공급(regulated utilities) 투자 920억파운드 등으로 구성
- 지방 철도망 프로젝트, 스마트 고속도로,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 2018 가을 예산안에서 제시된 280억 규모의 국가도로기금 등도 포함
 - 한편 계획이 발표된 투자 규모는 4천억파운드 이상(약 700여개)으로 이 중 1,900억파운드는 FY2018-19부터 FY2020-21 동안 이루어질 전망
 - 정부는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 기술과 같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추진을 확대하고자 함
 - 타 부문 대비 생산성이 저조한 건설 부문에서 최신 제조 기술을 활용한다면 생산성 제고 및 낭비 절감 가능
- 영국-EU, EU 탈퇴 협정⁶¹⁾ 및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⁶²⁾에 합의(2018. 11. 25.)⁶³⁾
 - (최근 추진 경과) 실무단 차원의 EU 탈퇴 협정

57) 의약품 대신 예술, 스포츠 클럽(그룹) 등 사회 활동을 권고하여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을 제고
 58) 질환 및 약물 반응성에 대한 유전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기법
 59) 인프라 투자 5개년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 to 2021, 2016년 발표)에서 설정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획·진행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
 60) 출처: HM Treasury, Projects worth £600 billion in the pipeline as government gets Britain building, 2018. 11. 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ojects-worth-600-billion-in-the-pipeline-as-government-gets-britain-building>
 HM Treasury,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 2018, 2018. 11.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infrastructure-and-construction-pipeline-2018>
 61) Withdrawal Agreement(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62) Political declaration setting out the 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63)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and Political Declaration, 2018. 11. 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ithdrawal-agreement-and-political-declaration>HM Government, Explanatory slides for the Withdrawal Agreement and Political Declaration on our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EU, 2018. 11. 25.

<표 10> 분야별 투자 규모(계획된 투자 기준)

(단위: 개, 십억파운드)

구분	프로젝트 개수	총액	2018/19	2019/20	2020/21	2020/21 이후
Communications	11	6.85	2.86	2.78	1.20	0.02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2	0.00	0.00	0.00	0.00	0.00
Education	21	14.04	5.32	4.74	3.98	0.00
Energy	96	189.19	15.45	17.82	18.41	137.50
Flood	28	2.40	0.65	0.62	0.65	0.48
Health	22	4.88	0.84	1.21	1.30	1.52
Home Office	2	0.05	0.02	0.03	0.01	0.00
Housing and Regeneration	13	14.49	4.31	3.58	3.47	3.13
Justice	33	1.40	0.32	0.64	0.45	0.00
Ministry of Defence	39	3.88	1.11	0.67	0.51	1.58
Police Forces	40	1.04	0.49	0.34	0.15	0.06
Science and Research	21	4.92	1.23	1.47	1.19	1.03
Transport	256	122.90	18.40	19.80	16.67	68.03
Utilities	95	46.98	11.74	14.96	8.72	11.56
Waste	5	0.10	0.08	0.02	0.00	0.00
Total	684	413.11	62.83	68.69	56.69	224.91

출처: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Analysi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 2018- Pipeline Summary Data, 2018. 11. 26.

초안 합의(11월 13일), 영국 특별내각회의 논의(11월 14일) 이후, 영국-EU는 EU특별정상회의(11월 25일)에서 EU 탈퇴 협정과 정치적 선언에 합의함

- (EU 탈퇴 협정) 이행 기간(implementation period) 조항을 포함해 영국이 EU를 원활하게 탈퇴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
-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 향후 EU와 영국 간의 관계에 대한 틀을 마련하여 2020년 말까지의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과 공통 이슈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지침을 제공
- (재정 관련 주요 내용) EU 탈퇴 협정 제133조

~제157조에 EU 분담금 정산 비용(financial settlement)에 대한 사항을 명시

* 협정에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영국 정부는 EU 분담금 정산 비용을 350억~390억파운드 추산한 바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상황 변동에 따라 확정될 예정

- 이행 기간 동안 EU의 예산 분담금은 현행 규정을 적용, 그 이후의 기간의 납부금은 2014~2020년 EU 예산의 영국 분담금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또한 영국은 2019~2020년에 EU 연간 예산에 참여하며, EU 예산에서 공정한 몫의 지원(수입)과 예산 환급(rebate)을 받을 예정
- EU 직원의 연금 부채, EU 및 유럽투자은행



보증 관련 우발 부채 등 EU의 순부채에 대한 영국의 비용 부담, 유럽투자은행과 유럽중앙은행 납입자본 및 EU 부과 벌금의 영국 지분 환급 등

- 2020년까지 EU 개발기금에도 계속 참여하며 해외 영국령에 대한 지원 혜택도 유지
-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납부 기준일(매년 6월 30일과 10월 31일), 지불 금액 규모 통보 기한(매년 4월 16일과 9월 16일) 등 EU-영국 간 재정 약속의 납부 일정도 명시
- 이 외에도 EU 탈퇴 협정은 이행 기간, 시민권,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거버넌스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
- (향후 일정) 탈퇴 협정과 정치적 선언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해서는 의회의 표결(12월 11일 예정)이 필요
 -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EU (Withdrawal Agreement) Bill]을 도입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EU 탈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국내법이 통과되어야 함
 - 탈퇴 협정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노딜 브렉 시트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캐나다

[예산·결산 등]

-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A)⁶⁴⁾ 하원 상정(2018. 10. 24.)⁶⁵⁾
 -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A)은 약 81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약 75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약 5억 6천만캐나다달러 편성
 - 주요 의결지출의 변화 내용
 - 원주민을 위한 인프라 및 사회, 교육, 건강 서비스 지원 등에 29억캐나다달러
 - 캐나다 인프라 계획(Canada Infrastructure Plan)^{66), 67)}에 10억캐나다달러 추가 자원투입(Canada Infrastructure Bank에 4억 8천만캐나다달러 지원 포함)
 - 인건비 지원에 9억캐나다달러(최근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인한 연봉 인상 소급분 반영 5억 4천만캐나다달러 포함)
 - 캐나다 해양경찰(Canadian Coast Guard) 쇄빙선 3척 구입 및 보강에 8억캐나다달러 등 정부 인프라 투자 지원

64) FY2018-19 1차 추경

65) 캐나다 재무위원회, <https://www.canada.ca/content/dam/tbs-sct/documents/planned-government-spending/supplementary-estimates/supplementary-estimates-a-2018-19.pdf>

66) 캐나다는 FY2016 예산안에서 중산층을 위한 고용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10년간 1,200억캐나다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인프라 투자 1단계는 대중교통 및 상하수도·폐수처리 시스템의 현대화,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 인프라 개보수 등에 대한 투자로 FY2016-17~FY2017-18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 2단계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투자로 청정에너지,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Canada Infrastructure Bank 창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

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8년 8월 제2호, 2018. 의회예산처가 작성한 Investing in Canada Plan 1단계 현황보고서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infrastructure-and-construction-pipeline-2018>

<표 11> FY2018-19 추경예산안(A)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본세출예산안 (Main Estimates)	추경(A) (Supplementary)	합계 (Total)
일반예산 (Budgetary)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112,866	7,547	120,413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163,102	555	163,657
	합계(Total Budgetary)	275,968	8,103	284,070
투·용자예산 (Non-Budgetary)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57	-	57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542	-	542
	합계(Total Non-Budgetary)	599	-	599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A), 2018. 10. 24.

■ 재무부,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발표(2018. 11. 21.)⁶⁸⁾

- 이번 가을경제보고서는 중산층 강화 목적의 지속적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및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포함
 - 모든 규모 및 부문의 기업 투자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40억캐나다달러 투자
 - 상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및 청정에너지 장비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
 - 캐나다 모든 경제 분야에서 혁신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략혁신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⁶⁹⁾에 5년간 8억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수출 다각화 전략(Export Diversification Strategy) 시행으로 2025년까지 수출 50% 증가 목표 등 캐나다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5년간 12억캐나다달러 지원
- 캐나다 국내 지방정부 및 주정부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장벽 제거에 5년간 6,800만캐나다달러 투입
- 연방정부 규제 부문 내에서 성별 임금 차별 철폐 시행 등 노력
- (경제전망) 2018-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2.0%로 2018 예산안 전망 대비 2018년은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은 0.4%p 상향 조정
 - 2018년 예산안 전망치 대비 GDP 디플레이터

68)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n18/18-107-eng.aspx><https://budget.gc.ca/fes-eea/2018/docs/statement-enonce/fes-eea-2018-eng.pdf>

69) 2015년 이후 정부는 중산층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투자 확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 예산안에서 전략혁신기금을 신설해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표 12> 2018년 가을 경제전망치 조정 비교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 ~2022
실질 GDP 성장률	Budget 2018	2.1	1.6	1.7	1.6	1.8	-	-
	2018 Fall Economic Statement	2.0	2.0	1.6	1.6	1.9	1.9	1.8
명목 GDP 성장률	Budget 2018	4.1	3.5	3.8	3.6	3.8	-	3.8
	2018 Fall Economic Statement	4.2	4.1	3.3	3.7	4.0	3.9	3.9
실업률	Budget 2018	6.0	6.0	6.1	6.0	6.0	-	6.1
	2018 Fall Economic Statement	5.9	5.8	6	6.1	6.0	6.0	6.0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Budget 2018	1.9	2.0	1.9	1.9	2.0	-	1.9
	2018 Fall Economic Statement	2.4	2.1	1.9	1.9	2.0	2.0	2.0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8, Table A1.1 일부 발췌, 2018. 11. 21.

(GDP inflation)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망 기간 동안 명목 GDP 성장률이 2018 예산안 대비 평균 약 90억캐나다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8 예산안 대비 실업률은 2018년 5.9%, 2019년 5.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전망 기간 동안 6.0%대를 유지할 전망

- (재정전망) 재정적자는 FY2018-19 181억캐나다 달러(GDP 대비 -0.8%)로 2018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7억캐나다달러 개선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FY2019-20에는 19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8%)로 2018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16억캐나다달러 증가하여 적자 폭이 증가할 전망

- 이후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23-24에 11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FY2018-19 30.9% → FY2023-24에는 28.5%로 예상

<표 13> 2018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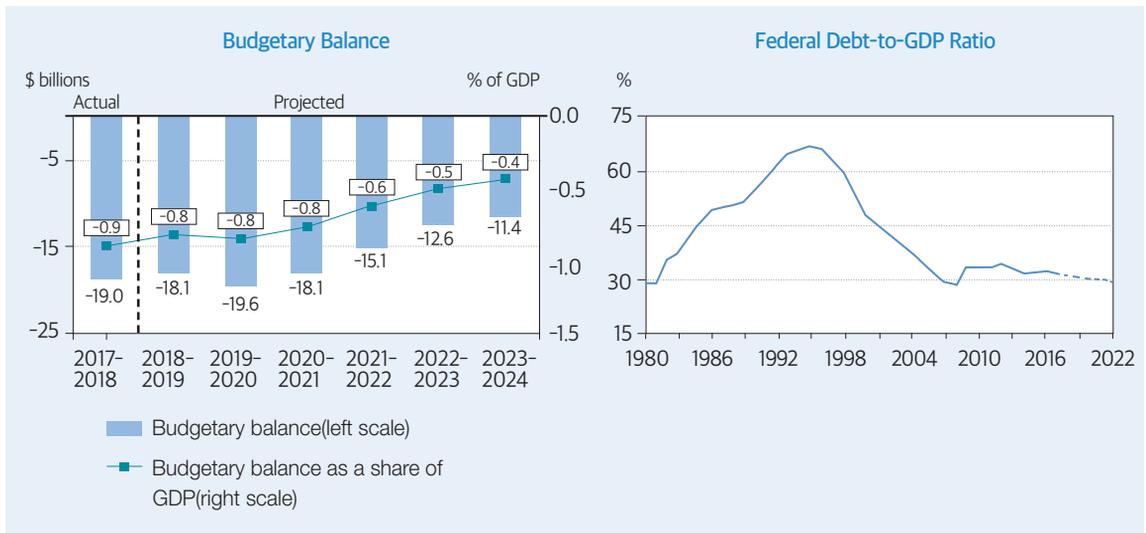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구분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Budget 2018 재정수지(a)	-19.9	-18.8	-17.8	-16.5	-13.2	-12.0	n/a
Budget 2018 위험조정(b)	-	3.0	3.0	3.0	3.0	3.0	-
Budget 2018 재정수지 (위험조정 제외)(c=a+b)	-19.9	-15.8	-14.8	-13.5	-10.2	-9.0	-
Budget 2018 이후 변화(d)	0.9	4.6	5.3	4.5	3.8	4.1	-
2018 가을경제보고서 투자 및 정책에 의한 조정(e)	-	-4.0	-7.1	-6.2	-5.7	-4.7	-5.2
2018 가을경제보고서 재정수지(f=c+d+e)	-19.0	-15.1	-16.6	-15.1	-12.1	-9.6	-8.4
위험조정(g)	-	-3.0	-3.0	-3.0	-3.0	-3.0	-3.0
2018 가을경제보고서 재정수지(h=f+g)	-19.0	-18.1	-19.6	-18.1	-15.1	-12.6	-11.4

주: (-)는 재정수지 악화, (+)는 재정수지 강화를 의미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8, Table A1.2 일부 발췌, 2018. 11. 21.

[그림 3] 재정수지(좌) 및 GDP 대비 채무비율(우) 추이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8, Chart 1.13 일부 발췌, 2018. 11. 21.



[기타]

■ 재무부, FY2018-19 1, 2분기(4~9월) Fiscal Monitor 발표(2018. 11. 21.)⁷⁰⁾

- FY2018-19 1, 2분기 재정수지는 약 12억캐나다 달러로 전년 동기 재정수지인 약 -62억캐나다달러 대비 약 74억캐나다달러 개선
 - (수입) FY2018-19 1, 2분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9억캐나다달러(8.8%) 증가한 약 1,592억캐나다달러
 -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2억캐나다달러(9.2%) 증가한 약 1,330억캐나다달러로, 개인소득세,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수입관세(import duties)의 증가에 기인
 - 고용보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캐나다달러(4.9%) 증가한 약 111억캐나다달러, 기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억

캐나다달러(8.7%) 증가한 약 152억캐나다 달러를 나타냄

- (프로그램 지출) FY2018-19 1, 2분기 프로그램 지출은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정부 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 지출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40억캐나다달러(2.8%) 증가한 약 1,458억캐나다달러로 나타남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정부 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2.8%, 3.2% 증가
- (이자지출) 전년 동기 대비 약 15억캐나다달러(14.3%) 증가한 123억캐나다달러로, 실질 이자율 채권(Real Return Bonds)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및 평균 실효이자율(average effective interest rate) 상승 반영에 기인

<표 14> 2018년 4~9월 Fiscal Monitor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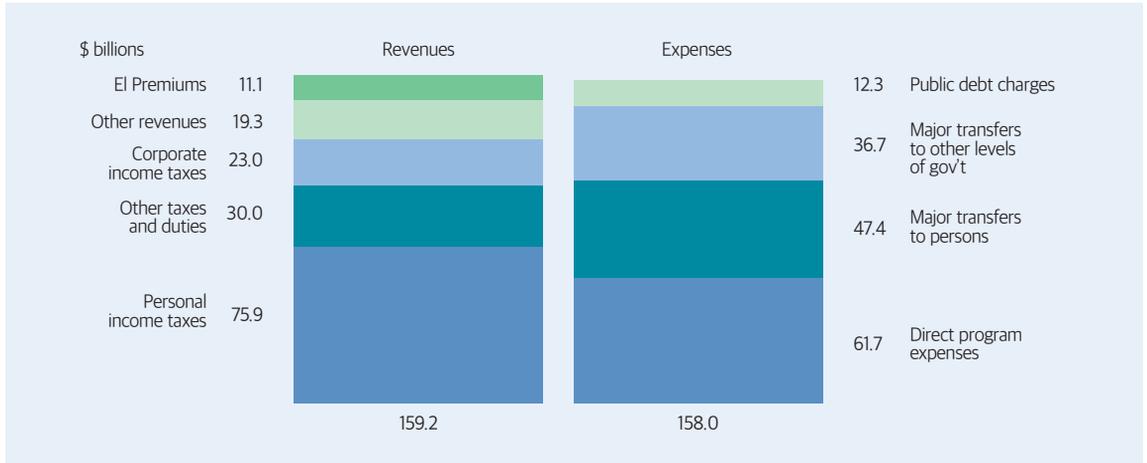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2017~18(4~9월)	2018~19(4~9월)	변화율
수입(Total revenues)	146,342	159,247	8.8
지출(Total expenses)	152,522	158,042	3.6
프로그램 지출(Program expenses)	141,786	145,769	2.8
이자 지출(Public debt charges)	10,736	12,273	14.3
재정수지(Budgetary balance)	-6,180	1,205	-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September 2018*, Table 2,3,5 일부 발췌, 2018. 11. 21.

70)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fiscmon-revfin/2018-09-eng.asp>

[그림 4] 수입 및 지출 구성(2018년 4~9월)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September 2018*, 2018. 11. 21.



호주

[기타]

- 호주 정부, 새로운 ‘미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 (Future Female Entrepreneurs Program)’에 360만호주달러를 투입하기로 함(2018. 11. 13.)⁷¹⁾
 -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기업가가 되려는 젊은 여성, 특히 농촌 및 지역 사회의 젊은 여성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시연 워크숍 방식을 통해 약 5만 5천명을 참여시킬 계획임

- 프로그램은 디지털 문명 퇴치, 기업가 정신 육성, 멘토십 제공을 위한 기존·신규 디지털 자원을 통합하는 역할을 함
- 해당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들이 현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의 고용 및 여성에 의한 고용 창출에 기여⁷²⁾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는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디지털산업 및 비정부 부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자금 지원과 연계할 것임

71) 호주 재무부, <http://jaf.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49-2018/>

72) 호주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여성들이 풀타임(full-time) 근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적게 벌고 있으며, 파트타임(part-time) 근로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2배가 넘고 있음



| 정책흐름 |

-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 주요 내용
-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8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제목

**2019년 총지출은 정부안(470.5조원)
대비 △0.9조원 감액된 469.6조원**

- 2019년 예산이 12.8일 오전 04시반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총지출은 △5.2조원 감액, +4.3조원 증액
→ 정부안 대비 △0.9조원 순감(470.5 → 469.6조원)

- 앞으로 정부는 12.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

※ 상세한 내용은 p.121 별첨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표 참고

I 2019년 재정총량

1. 총지출과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감소

- 총지출은 정부안(470.5조원) 대비 △0.9조원 감소한 469.6조원(감액 △5.2조원, 증액 4.3조원)
-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3조원) 대비 △5.3조원 감소한 476.1조원

2. 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소폭 악화

- 관리재정수지는 △37.6조원(GDP 대비 △2.0%)으로 정부안 대비 △4.2조원 감소
- 국가채무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정부안 대비 △0.2조원 감소
 -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 등에 따른 3.8조원 국채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 4조원 국채 조 기상환에 따라 감소

(단위: 조원, %)

구분	'18년		'19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 증감 (C-B)	전년 대비 (C-A)	%
총수입	447.2	447.7	481.3	476.1	△5.3	28.9	6.5
총지출	428.8	432.7	470.5	469.6	△0.9	40.7	9.5
관리재정수지	△28.5	△31.4	△33.4	△37.6	△4.2	△9.0	-
(GDP대비, %)	(△1.6)	(△1.7)	(△1.8)	(△2.0)	-	-	-
국가채무	708.2	700.5	741.0	740.8*	△0.2	32.6	-
(GDP대비, %)	(39.5)	(38.6)	(39.4)	(39.4)	-	-	-

* 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18년 국채 조기상환 △4조원 반영

II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스마트 산단 조성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 스마트 산단 2개소 신규 조성 등
 -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700개사) 및 시범공장 추가(+9개소)
 - 공장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20개공장) 및 노후설비 교체
 - 제조공정 개발 R&D투자 및 대표공장 추가 확대(3→5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782	2,661	+767	3,428	- 스마트공장 +700개사 (2,100→2,800개사) - 시범공장 +9개 (16→25개)
전력효율 지원	460	437	+8	445	- 산단 2개지역 LED, 전동기 등 노후설비 교체
기후변화대응 협약	103	100	+22	122	- 20개 공장에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도입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591	519	+104	623	- 스마트제조 관련 산학연 공동 R&D 지원 (26개)
섬유류혁신 역량강화사업	-	48	+15	63	- 지능형 자동봉제 및 염색가공 기술개발(15억원)
스마트공장 제조 핵심기술 개발	40	103	+13	116	- 대표공장 +2개 (3→5개)

- (수출시장 다각화) ASEAN 국가 등 신남방 시장 진출기업 보증 확대(신·기보 90억원 출연) 등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신남방시장 지원 신·기보 출연	-	-	+90	90	- 신보 60억원, 기보 30억원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78	76	+6	82	- 조선기자재 온라인 거래 플랫폼 +2억원 - 조선기자재 수출 및 A/S거점 +2억원 등

-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 자금 및 R&D 지원 확대
 -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 대상 보증 지원 확대(신·기보 650억원 출연)
 - 위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Scale-up R&D 사업 신설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신·기보 출연(신남방 소요 포함)	400	800	+740	1,540	- 신보 500→910억원, 기보 300→630억원
위기지역·구조조정 업종 R&D	114	138	+107	245	- 위기지역 8개 사업 기반 구축 89억원 - 중견·중소조선소 설계 기술 개발 18억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	-	+48	48	- 단계별 지원(우수과제 발굴 → 선발과제R&D 지원)으로 위기지역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48억원

■ 미래대비 투자 확대

- 기초연구 확대 및 R&D 질적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기능 강화
- 규제샌드박스 3법* 통과('18.9월)에 따른 제도 운영비 반영(79억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지역 전략산업 대상 SW융합 지원(5개지역)
- 5G 상용화('18.12월) 대비 5G 시험망 조기 구축
-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R&D 신규 반영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개인기초연구(과기부)	7,730	9,595	+201	9,796	- 중견연구 신규과제 1,056→1,190건
기초원천연구 기획심사평가	197	197	+25	222	- 기초연구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 13억 - 원천기술 개발 프로세스 혁신 12억
SW융합 클러스터 2.0	-	-	+63	63	- 5개 지역 대상 SW융합 지원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	-	+4	4	- '19~'23년간 총 128억원 투자 계획
규제샌드박스 운영	-	-	+79	79	- 과기·산업·중기부 규제샌드박스 운영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	-	+71	71	- '19~'25년간 총 5,281억원 투자 계획

■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2조원 확대
 - * 안성-구리고속도로: ('18) 2,430 → ('19안) 2,659 → (최종) 3,259억원
 - * 도담-영천 복선전철: ('18) 3,360 → ('19안) 3,391 → (최종) 4,391억원
 - * 서해선 복선전철: ('18) 5,883 → ('19안) 5,985 → (최종) 6,985억원
 -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18) 2,877 → ('19안) 2,900 → (최종) 3,900억원
 - * 신안산선복선전철: ('18) 100 → ('19안) 800 → (최종) 850억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 개선 지원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서울·부산): ('18) 570 → ('19안) - → (최종) 414억원

■ 민간 투자 촉진 및 관광 활성화 지원

- (산업 인프라)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 확충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확대(+70억원)

-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산단 내 대학캠퍼스 추가 조성(+2개소)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지역투자 촉진	761	1,411	+70	1,481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산학융합지구 조성(R&D)	101	150	+60	210	- +2개소(2→4개소)
기타 기반시설	6	65	+35	100	-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35억원
외국교육연구 기관유치 지원	38	46	+26	72	-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분교 설립

•(창업) 창업인프라 구축 등 혁신창업 활성화

- 스타트업파크 조성,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설치(6개소) 등 창업·사업공간 제공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창업생태계기반 구축	105	1,032	+60	1,092	- 스타트업파크 조성 +56억원 등
창업인프라지원	490	513	+90	603	- 지식산업센터 60억원 (6개소) - 창업보육센터 확대 30억원

•(관광) 주요 관광지의 경쟁력 강화

- 감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사업 신규 지원 (+20억원)

* 한국관광공사 국내지사(10개소) 활용 기초지자체 관광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실시

- 축제의 경쟁력 제고 및 대학로의 공연관광 명소화 지원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감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	-	-	+20	20	- 기초지자체 관광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실시 +20억원
축제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인 축제 육성	-	3	+10	13	- 글로벌 축제 후보군 관광상품 개발 지원 +5억원 - 글로벌 축제 수용태세(홈페이지 외국어서비스 등) 개선 지원 +5억원
테마관광 활성화	21	18	+12	30	- 대학로 거리공연 지원 +9억원, 지역공연 장소 제공 +3억원

2. 사회안전망 확충 등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저출산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19.1월~) 및 지급 대상 확대(만 6세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19.9월~)

- 가정양육가구에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입학 전(前)까지 지급 (입학 전 12월→2월)
-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지원(+19억원)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항목 및 횟수, 소득기준 대폭 확대
-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확대(+713억원)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아동수당 지급	7096	19271	+2,356	21,627	- 보편지급(90%→모든 아동, '19.1월~) - 지급 대상 확대(만6세미만→초등학교 입학 전, '19.9월~)
가정양육수당 지원	10,891	8,879	+44	8,923	- 입학 직전달(입학 전 12월→2월)까지 가정양육수당 지급
국가예방접종 실시 (임신부 인플루엔자)	-	-	+19	19	- 임신부 33만명 대상 무료접종
난임시술비 지원	47	13	+171	184	- (지원 대상) 건보 비급여 항목 → 건보 본인부담금도 지원 - (지원항목) 신선배아 4회 → 최대 10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추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180% 이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927	37,440	+713	38,153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확대

어르신

- 어르신 요양서비스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
- 치매위험군 어르신,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처 치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확대
-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1천호 신규 반영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8,058	9,960	+392	10,351	- 장기요양보험료 +15.3% 인상 반영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	25	17	+6	23	- 어르신 4억원, 감정노동자·난치병환자 가족 등 지원 2억원
고령자복지주택	-	-	+55	55	- 1천호 신규 반영

장애인

- 장애인의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강화
 - 저상버스(+100대) 및 장애인 콜택시(+100대) 확대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향유기회 지원 확대(+10억원)
-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감안,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인원 확대(+3천명, 78천명→81천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 확대(+1천명, 1.5천명→2.5천명)
-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규 건립(+170억원)
- 중증장애인 대상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4.8천명→9.6천명)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저상버스 도입 보조	340	340	+36	376	- 저상버스 +100대 (800→900대)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30	27	+20	47	- 장애인콜택시 +100대 (128→228대)
장애인문화 예술 지원	30	38	+10	48	- 공모 확대 +55개 (188→243개)
장애인활동 지원	6907	9685	+350	10035	- 지원인원 +3천명 (78→81천명) - 가산급여 +320원 (680→1,000원)
발달장애인 지원	86	346	+81	427	- 지원인원 +1천명 (1.5→2.5천명)
장애인차별 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32	31	+20	52	- 학대피해시스템 구축 +16억원 -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 +4억원
장애인직업 능력 개발원	10	-	+170	170	- 부지매입비 일부 및 설계비 반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	7	+6	13	- 지원인원+4.8천명 (4.8→9.6천명)

■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2개소 구축(+50억원)
* 소공인 입주, 제품 개발, 공동장비 활용, 전시·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 적합업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공동협업사업 지원 확대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홍보 강화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소공인특화지원	340	369	+50	419	- 복합지원센터 2개소
업종별 경쟁력 강화	10	10	+9	19	- 공동 사업지원 과제 +10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	50	+10	60	- 마케팅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지원

-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시행(19.8.1일)에 따른 대학의 부담 증가분(방학 중 임금) 지원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배치, 보호전문 기관 3개소(아동 1, 노인 2) 추가 확충
-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 행정처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 지원 강화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국립대학 시간 강사 처우 개선	1,123	1,123	+71	1,194	- 방학 중 임금 지원
사립대학 시간 강사 처우 개선	-	-	+217	217	- 방학 중 임금 소요의 70%는 보조, 30%는 저리 용자 (연 1.5%)
피해자국선 변호사 지원	42	52	+4	56	- 전담변호사 미배치 4개 지역 배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93	222	+3	225	-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노인보호전문 기관	76	83	+3	86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자살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604	709	+20	729	-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전문상담 지원 +20개소 등

3. 국민 안심사회 구현

■ 군 복무여건 개선

-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 인상(1인당 1일 1,700→2,000원)
-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전(全) 장병(12.4만명) 동계점퍼 지급 등 군 복무여건 개선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65	67	+12	79	- 1인당 1일 단가 +300원(1,700→2,000원)
병영생활관 공기청정기 보급	-	29	+338	367	- 함정·상황실 등(4,981대) → 전 병영생활관 확대(65,781대, +60,800대)
패딩형 동계 점퍼	-	20	+49	69	- 격오지 일부부대 3.7만명 → 격오지 전장병 12.4만명(+8.8만명)

■ 자연·사회재난에 대비 예방 투자 확대

-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 개별소비세의 20%→'19.7월 35% →'20년 45%)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 뒷받침
-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 개발, 배수 개선 등 가뭄·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1,097억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 노후합정 교체, 해상 조난자 탐색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88억원)

-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1,441억원)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소방안전교부세	4,173	3,838	+1,537	5,375	- 담배 개별소비세의 20→35%(19.7월~)
농업생산기반투자	19,672	18,868	+1,097	19,965	- 수리시설 개보수 +515억원, 농촌용수 개발 +126억원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3,736	3,930	+62	3,992	- 신규 5개소 반영 및 5개소 조기 완공
통신위성장비 관리	146	137	+23	160	- 중계도 위성 수신 안테나 2기 구축
100톤 노후 경비함정	1,261	1,193	+21	1,215	- 100톤 노후 경비함정, 고속단정 교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186	810	+611	1,421	- 수소차 +2천대(2→4천대) - 충전소 +10개소(20→30개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523	4,573	+830	5,403	- 전기차 +9천대(33→42천대) - 급속충전기 +100기(1,100→1,200기)

■ 물 문제 현안 대응 및 물산업 기반 구축 지원 강화

- 낙동강 유역의 당면한 물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
 - *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신규 10억원), 구미산단 하수처리시설 폐수 전량 재이용 방안 연구(신규 10억원)
-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실험장비 조기 도입 및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지원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낙동강 지역 물 공급 기반 연구	-	-	+20	20	-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 구미산단 폐수 전량 재이용 방안
지하수 저류지 설치(보길도)	-	-	+3.5	3.5	- 설계비 지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실험장비	-	72	+124	196	- 장비비 지원 확대
유체성능시험 센터	-	-	+7	7	- 설계비 지원

■ 남북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 고령 이산가족을 위해 화상상봉 추진(3회)
-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 철거 및
조경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소
요 반영(+97억원)
-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등 지원 확대(+30억원)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비고(정부안 → 최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이산가족 교류지원	120	336	+59	395	- 화상상봉 행사 3회
GP 시범철수 관련	-	-	+97	97	- GP시범철수 시설물 철거 등 +97억원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12	+30	42	- 콘텐츠 개발 23억원, 기반조성 5억원 등

III 향후 계획

■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 국무회의 상정·의결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11일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

참고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분	'18예산	'19예산		증감		
	본예산 (A)	정부안 (B)	최종(C)	국회 증감 (C-B)	'18대비 (C-A)	증가율
◇ 총지출	428.8	470.5	469.6	△0.9	40.7	9.5
1. 보건·복지· 고용	144.6	162.2	161.0	△1.2	16.4	11.3
2. 교육 (교부금 제외)	64.2 (14.6)	70.9 (15.2)	70.6 (15.4)	△0.3 (0.2)	6.5 (0.8)	10.1 (5.1)
3. 문화·체육· 관광	6.5	7.1	7.2	0.1	0.8	12.2
4. 환경	6.9	7.1	7.4	0.2	0.5	7.2
5. R&D	19.7	20.4	20.5	0.1	0.9	4.4
6. 산업·중소· 에너지	16.3	18.6	18.8	0.1	2.5	15.1
7. SOC	19.0	18.5	19.8	1.2	0.8	4.0
8. 농림·수산· 식품	19.7	19.9	20.0	0.1	0.3	1.5
9. 국방	43.2	46.7	46.7	-	3.5	8.2
10. 외교·통일	4.7	5.1	5.1	△0.01	0.3	7.2
11. 공공질서· 안전	19.1	20.0	20.1	0.1	1.1	5.5
12. 일반·지방 행정 (교부세 제외)	69.0 (23.0)	77.9 (25.1)	76.6 (24.1)	△1.4 (△1.0)	7.5 (1.1)	10.9 (4.6)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본 자료는 2018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 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 신설
 -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부가가치세법>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탁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 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로 유지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관세법>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 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감면을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 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을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19. 4. 30.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인지세법>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참고

재정포럼

2018년 12월호 통권 제270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편집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권남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8년 12월 14일 발행 / 제22권 제12호(통권 제27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4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인터넷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쉽게 얻은 정답은 진짜 나의 지식으로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식인이 되는 방법, 인터넷 검색(searching)이 아닌 독서(reading)입니다.